사회적기업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Wonju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
(통합 제21차 총회)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18시 30분

장소 : 밝음신협 4층 무위당기념관

사회적기업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목 차

1. 제9차(통합21차) 정기대의원총회 진행순서 5

2. 인사말 6

3. 제8차 정기총회 의사록 10

4.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및 자료

제1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16

제2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 안 20

제3호 의안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조직통합 비전 결의의 건 67

제4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68

제5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70

제6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79

제7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115

제8호 의안 2022년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 116

제9호 의안 기타 안건 118

〈특별활동〉

- 새로운 20년을 위한 비전위원회 활동..... 119

- 원주의료사협 자기진단 결과보고서 125

〈부록〉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141

- 2022년 신규 조합원 명단 143

- CMS “고립된 이웃” 정기 후원자 명단(무순) 144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4기 대의원 명단 145

- 조합 정관 146

제9차 정기대의원 총회
(통합 제21차) 진행순서

제1부 기념식

1. 개회선언
2. 인 사 말
3. 내빈소개
4. 축 사
5. 폐 식

제2부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

1. 성원 확인 및 보고
2. 개회선언
3. 서기 및 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임
4.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5. 2022년 종합감사보고
6. 상정의안 심의
7. 폐회선언

인 사 말

벌써 또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못한 채 의료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10%도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코로나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의료가 부족하다 보니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할 공공의료기관의 입원실이 부족하고, 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며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니, 민간의료기관에 막대한 보상을 해주며 지난 3년을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약 8조 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된 금액이 약 7조 8천억이 됩니다. 이 막대한 돈이 민간의료기관 중에서도 병원급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의 보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합 창립 21년을 맞이하는 2023년의 중요한 정기총회에서 코로나 관련 이야기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중의 일부가 우리 조합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2년 2월에서 5월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환자의 폭증으로 병원급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으로도 관리가 되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에 참여가 절실했습니다. 우리 조합의 밝음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시간 코로나 환자 관리라는 역할을 우리 조합의 창립 정신과도 맞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합의 사명과도 부합하기에, 일과 시간 이후에도 관리를 해야 하는 코로나 재택진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코로나 환자 관리 수가가 평상시보다 높게 책정되어 뜻하지 않게 매출 증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매출 증대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현금 유동성이 원활해져서 장기 차입금과 몇 년 이상 된 미지급금도 전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무적 상황의 반전과 안정 속에서 조합 창립 20주년 행사도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고 '마중'이라는 조합 창립 20주년 책자도 발간하여 지난 20년의 기록을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은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해 우리는 지난 20주년을 준비하면서 발표했던 4개의 슬로건 중에 '의료기반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가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4무 2탈의 존엄케어를 위한 사업소를 준비해야 하며, 새로운 사회적 예방을 위한 상호부조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침, 원주와 춘천, 충주에서 활동하는 아이쿱 생협에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 조합과 함께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것 또한 조합 역사에서 처음 있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는 항상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지난 20년의 우여곡절을 이겨낸 결사체적 정신과 단합입니다. 약점은 재무적 상황과 의료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었던 것이 작년을 통과하면서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의 밝음의원은 외래 중심성을 유지하면서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정간호 등)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하는 자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새로운 변화도 기꺼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변화를 위한 좋은 조건이 형성될 것입니다.

조합원과 대의원 여러분과 임원과 직원분들을 믿고 올 한 해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정말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28일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광희

축 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9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축하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한국사회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재난 중에 사회양극화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도 코로나 19로 3년째 시민들이 생활에서의 여러 제약을 감수해야 했고, 경제는 얼어붙었고 특별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인구 절벽을 넘어서 인구감소의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고물가의 경제 침체는 더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과도 같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렀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의 심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좀처럼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위기는 곧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코로나 19가 보건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론 기존의 보건의료, 돌봄, 감염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돌봄 및 일차보건의료 체계 강화라는 대안을 찾아가도록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협은 오랫동안 주치의 사업과 커뮤니티케어를 실천해왔고 지역사회에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여왔기에,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향후 2023년~2025년은 의료사협의 대약진 기회라고 봅니다. 2015~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장애인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고, 장애인건강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후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의료와 돌봄, 복지를 연계하는 사업인데, 의료사협에서 추진해온 주치의와 돌봄 복지 연계가 우리 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에서도 이미 많은 의료사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추진되는 주치의 사업, 커뮤니티케어는 의료사협의 상징적인 사업이 되었고 향후 우리 사회의 의료복지, 돌봄의 근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료사협에서의 조합원의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은 이제 사회적경제 전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내부에 협력이 강화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농 간의 협력, 의료사협,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상호출자 제도는 특별히 아직 자산이 적은 신생 의료사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협동하여 시민들이 서로 돕고 돌보는 것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민관협력을 추동하고 제도 개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 오신 의료사협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제8차 정기대의원 총회
(통합 제20차 총회)의사록

2022년 3월 24일

의　　장 : 이사장 이광희 (인)

서기 및 기명날인인 : 대의원 김지영 (인)

기명날인인 : 대의원 이상진 (인)

기명날인인 : 대의원 장동성 (인)

사회적기업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0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1. 회의명칭 :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
2. 소집통지 : 2022년 3월 16일(수)
3. 일　　시 : 2022년 3월 24일(목) 18시 30분
4.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밝음신협 4층 무위당기념관
5. 정 족 수 : 대의원 정수 100명 중에서 과반인 51명 이상인 61명 참석으로 개회
6. 의장성명 : 이사장 이광희

7. 식　　순 : 가. 제1부 기념식
　　나. 제2부 대의원총회

8. 부의안건

제1호 의안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 안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2021년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기타 안건

9. 총회경과 및 의안심의 내용

가. 제1부 기념식

1) 개회선언

- 신승훈 전무(이하 사회자)가 18시 40분에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0차) 기념식 개회를 알리다.

2) 인 사 말

-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이광희 이사장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인사말을 전하다.

3) 내빈소개 및 축사

- 내빈소개로는 이도식(밝음신협 이사장), 정용호(밝음신협 상임이사), 지숙현(원주시여성친화도시 대표), 김형미(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우순자(원주시여성커뮤니티센터 센터장), 김유미(원주해맑은미소아이쿱협동조합 이사장)를 소개하고 축사는 생략하다.

나. 제2부

제 8 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0차 대의원총회) 본회의

1) 성원확인 및 보고
- 이광희 이사장(이하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고 성원 보고를 요청하여 신승훈 전무가 대의원 100명 중에서 61명 참석(과반수는 51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받고 의장이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0차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 의장이 의사록 기명날인인 서기 1명을 포함하여 3인을 선임하고자 하며 참석 대의원 가운데 자발적으로 역할을 맡아주실 분이 있는지 물었으나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해 이상진 대의원과 장동성 대의원이 의사록 기명날인인, 김지영 대의원이 서기 및 기명날인 인으로 추천되어 이에 의장이 동의를 묻자 참석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의장이 이상진 대의원과 장동성 대의원이 기명날인 인으로 김지영 대의원이 서기 및 기명날인 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4)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의장이 총회 자료집 9쪽~14쪽의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장이 이에 대한 참석대의원 의견을 묻자 참석대의원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상정 부의안건 심의
- 의장이 제1호 의안부터 제7호 의안 순서대로 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부의안건을 의장의 제안대로 심의할 것을 참석대의원에게 물어 참석대의원 모두 동의하여 심의에 들어가다.

○ 제1호 의안 -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2022년 3월 14일에 박찬현, 정연우 감사에 의해 실시된 조합의 종합감사 의견을 박찬현 감사가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다. 의장이 자료집 16~17쪽 참조할 것을 주문하다.
- 의장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

여 의장이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고 이에 참석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제1호 의안인 2021년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 안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자료집(18~71쪽)의 2021년 조합 활동 총평 및 결산 요약 등 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김미연 대의원이 20쪽의 심사보험평가원 행정처분 통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이 있는지 묻다.
- 신승훈 전무가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에게 피해가는 것은 없고 조합에서 모든 책임을 짐을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청구와 관련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및 교육을 하고 있음을 말하다.
- 이후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장동성 대의원이 45쪽의 차입금 현황 중 강원 상승(SE)자금의 대출용도에 대해 묻다.
- 신승훈 전무가 강원 상승(SE)자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 신규 원장님 인건비 및 신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려 했음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여 예적금으로 묶어 놓은 상황임을 설명하다.
- 이후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김미연 대의원이 조합 이전과 관련하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다.
- 박준영 부이사장이 조합 이전과 관련하여 당조합이 사용중인 건물 매각 현황과 밝음신협이 조합 옆 건물을 재건축후 조합도 같이 이전하는 것을 설명하다
- 이후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자,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내용과 잉여금 처리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참석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자료집 72쪽~103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참석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4호 의안 -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 의장이 2022년 신규 차입금 최고 한도액(안)을 5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의 의견을 묻자 참석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제4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 제5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조합이 3년 마다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받고 있음과 감사 지적 사항이었던 정관 개정(안)(자료집 105쪽~106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관 개정(안)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참석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6호 의안 - 2021년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2021년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2021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자료집 107~108쪽)에 따른 명단(탈퇴, 제명, 양도)과 출자좌수 및 출자총액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참석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제6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1. 출자좌수 : 29,779좌
2. 출자총액 : 297,797,374원

○ 제7호 의안 - 기타 의안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안이 있으면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다.
- 의장이 기타 의안은 없는 것으로 선포하다.

- 폐회선언 전 의장이 마지막으로 공지할 사항이 있는지 묻다.

- 이에 신승훈 전무가 참석 대의원들과 조합 직원간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조합 직원 및 참석 대의원 간 서로 박수로 화답하다.
- 이어서 조합 20주년을 맞이하여 20주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영 준비위원장을 소개하고, 조합의 20년을 설계할 비전위원회의 취지와 방향, 위원으로 참여해줄 것을 설명하다.

- 의장이 이상의 부의 안건을 모두 승인 후, 제8차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0차)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시간은 19:37분임.

- 의장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총회에 참석해 준 대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다.

7) 폐회선언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 총회에서 기명날인 인으로 선출된 3명(서기 포함)의 대의원이 기명날인 또는 기명하기로 하다.

제 1 호 의안 :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2022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근거 : 정관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도 종합 감사보고서

< 개 요 >

□ 감사일시 : 2023. 2. 6.(월) 17:00 ~ 18:30
□ 감사장소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
□ 감 사 자 : 감사 박찬현, 정연우
□ 대상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 감사방법 : 각종 재무제표를 통한 경영상황 분석, 이사회 자료 등 을 활용한 협동조합 운영상황 파악

본 감사는 2022년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며, 대조, 실사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회계기준 및 정관에 따라 조합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사실에 맞게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가) 재무제표와 현금흐름 결과가 일치하고 재무제표상의 금액이 세부내역과 일치하는 등 거래내용의 명기 및 금전의 출납, 지출과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자산의 표시가 오류나 누락 없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손익에 있어서는 2,229백만원의 매출에 406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총 매출은 전년(985백만원) 대비 12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창립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수행을 통한 재무상태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1,118백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고인 406백만원으로 전년(16백만원)대비 390백만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과 소비위축으로 대부분의 경제조직들의 매출과 손익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매우 양호한 경영실적을 실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선진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서 협동조합으로서 손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과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회계 처리 및 증빙, 신고와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지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있어서는 출자금(293백만원)과 지난해 결손금중(503백만원)의 처리하여 현재153백여만원의 결손금만을 보유하여, 부(-)의 자본에서 벗어나 155백만원의 자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채 또한 장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0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자본이지만 장족의 발전을 하였으며, 자금 소요를 고려하여 연도별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시고 보수적 자금흐름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적 측면에서 기존업무 관리의 적정성 검토와 밝음의원 안정화를 위한 의료진의 구인이 시급합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인한 업무증가가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도록 관리업무 수행 체계와 기간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적 측면에서는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택치료기관 수행을 통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이루었고, 기존에 정리하지 못했던 장기차입금 및 미지급금을 모두 정리하였으며, 재택의료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가정간호 등) 의 오랜 운영에 따른 가시적 성과와 가정간호센터 인력증원으로 인한 안정화를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길동무의 하반기 대상자의 자연감소 및 신규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침체, 2021년 12월 곽원장님, 임원장님 퇴직에 따른 의료진의 공백 등은 올해 깊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은 기존 의료사업의 성장은 물론 의료사업과 돌봄 사업의 통합과 연계, 원주의료사협다운 호혜적 돌봄의 구체적 실행까지 고민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지역 내 통합돌봄은 우리의 나이 들어가는 만큼이나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나이 들어가듯 호혜적 통합돌봄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단기적 조급함과 개별적 사업의 관점보다 생애 전체를 바라보는 사업의 통합성과 장기

적인 관점에서 끈기를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2) 마지막으로 조합원 증대와 조합원 이용률 증대, 적절한 예산과 투명한 지출을 당부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법규들도 잘 파악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예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헛되이 날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많은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발전시키고 공동체적 경영관리, 새로운 사업을 위한 준비를 훌륭하게 수행하면서도 좋은 경영성과를 이루신 이사장님 원장님들, 이하 모든 임직원과 조합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6

감사 박 찬 현
감사 정 연 우

제2호 의안 :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 안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 보고

□22년 전체 총평

1.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수행을 통한 재무상태 개선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는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추진.
조합에서는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을 위해 코로나 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을 신청·지정 받음.
2월 14일 ~ 5월 30일까지 운영하였고 기존 근무자 외 10명의 추가 단기 채용을 통하여
최대 1일 450명의 확진자들을 24시간 관리함.(1인 1일 기준 수가 83,260원)
이를 통해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수가만을 통해 1,118,598,100원의 수익이 발생함.
6월 1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코로나 19 유공 포상 표창패” 수상(강원도지사)

2. 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성료

조합 20주년을 맞이하여 6월 23일 오후 2시 상지대학교 본관 5층에서 기념 행사 및 포럼을 진행 함. 1부 기념식에서는 20주년 기념 영상을 비롯하여 감사패 및 공로패(총 10명) 수여와 비전 선포식을 하고 2부 포럼에서는 기조 강연, 주제발표, 간담회 순으로 진행함.
조합원, 직원, 내빈, 유관기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음.

3. 장기 차입금 및 미지급금 정리

발생일자	거래처	금액	내용
2013.03.01	부부의원	25,000,000	골밀도 외 양수 양도 계약 (의료기기 등)
2013.02/05/07	박준영	12,000,000	장기 차입금

2014.02.28	곽병은	4,312,790	퇴직금
2017.01.01	곽병은	9,007,185	미지급 급여
2017.01.01	박준영	3,715,650	미지급 급여
2017.07.07	박준영	80,412,364	장기 차입금 1억 5천 중 잔액
2021.09.15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000	강원상승자금(SE)
합 계		234,447,989원	

*조합 운영에 있어 필요했던 장기 차입금 및 미지급금을 모두 정리 함.

4. 가정간호센터 안정화

가정간호센터 인력 증원(배순찬 센터장(원주) 입사, 5월 23일).
현 3명(원주 2명, 강릉 1명), 가정간호사 인력 증원에 따른 가정간호 매니저 1명 채용 함.
22년 매출액은 348,055,945원으로 월 평균 2,900만원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음.
비용(인건비, 재료비)을 제외하고 22년 수익금은 126,674,268원으로 월 평균 1,050만원임
요양원 및 재가(가정)의 지속적인 수요와 확대에 따라 안정적 운영이 예상됨.

5. 재기장기요양기관 “길동무” 대상자 확대 방안 필요

상반기의 경우 대상자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가족요양의 소폭 증가와 안정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하여 비교적 잘 운영되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대상자의 자연 감소 및 신규 대상자 부족 사유로 또 다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 됨.
상반기 평균 월매출액 2,150만원, 하반기 평균 월매출액 1,53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 함.
“길동무”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6. 우리동네주치의의원 휴업

21년 12월 곽원장님, 임원장님 퇴직에 따른 의료진 공백 발생함.
원장님 구인을 위해 지속 노력하였으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 실패함.
경영 상황 및 의사 구인 고려하여 휴원하기로 함.
22년 6월 1일 ~ 23년 5월 31일, 1년간 휴업하는 것으로 신고·승인(원주시보건소)

7. 재택의료서비스 안착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사업 확대

재택의료서비스(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정간호 등)의 오랜 운영에 따른 노하우 및 안착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확대와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보건복지부, 강원도 內 원주 최초 지정)
-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원주시 생활보장과,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원주종합재가센터)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원주시 복지정책과, 4개 복지관)
- 춘천방문진료프로젝트(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감댐지사,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노인맞춤형돌봄사업(원주시 경로장애인과, 4개 복지관)
- 병·의원 연계형 건강관리 시범사업(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 방문재활 등 방문형 건강관리사업(원주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NH투자증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프로젝트(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외에도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 및 정책사업에 지속 참여하고 있음.

8. 지역주민 및 조합원을 위한 건강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 노력

1)조합 20주년 기획 “돌봄의 모든 것 -PTC 따뜻한 자기돌봄”(6회차) : 13명 참여
2)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 발표“ 지역 돌봄과 찾아가는 간호” : 40명 참여
3)신규 조합원 설명회 : 8월 11일(2회), 8월 22일(2회) / 총 4회 진행
4)아이행복마을 실습생(간호학과 학생) 교육 : 9월 2일, 14일, 28일
5)코로나 19 유공 포상 표창패 수상(원주의료사협 밝음의원) : 강원도지사
6)협동조합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상(김종희 원장) : 강원도지사
7)장애인 건강관리 및 증진 교육 : 원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활동 : 22명
9)지역사회복지연계 : 연탄 후원 3명, 이불 4명, 전기장판 5명

9. 밝음의원 안정화를 위한 의료진 구인 시급

21년 12월 31일자로 곽병은, 임동란 원장님의 퇴직에 따른 의료인 공백 발생 함.
4개월 전부터 의사 구인 싸이트, 의료사협연합회, 지인 등 의료인(의사) 구인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22년 연말까지도 연착륙을 위한 구인은 하지 못함.
상반기 2인 체제(김종희, 강창희 원장님)로 진료일 등 을 개편하였고, 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다시 곽병은, 임동란 원장님 재결합함.(방문진료, 촉탁의 등 재택의료 진료만 수행)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등 외래환자 및 재택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래 또는 방문진료를 전담해줄 의료진 구인이 시급한 상황임.
원주의 경우 지방이라는 인식과 코로나로 인한 의사들의 임금 상승에 따라 빠른 구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3년 상반기 내에 구인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 함.

10. 22년 매 출 액 : 2,229,088,085원(21년 985,525,200원)

영업 이익 : 784,142,254원(21년 -16,501,802원)

당기순이익 : 406,973,492원(21년 16,008,634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06,973,492원 설정함.

■ 22년 사업결산

1. 조합 경영 보고

구분	항목	조합	밝음의원	밝음의원 가정간호센터	재가장기요양 “길동무”	계
매출(a)	주수입	287,947,037	1,658,027,800	348,055,945	223,004,340	2,517,035,122
	기타수입	78,116,809				78,116,809
	계	366,063,846	1,658,027,800	348,055,945	223,004,340	2,595,151,931
비용(b)	인건비	81,056,854	560,019,312	191,294,588	173,279,121	1,005,649,875
	재료비		97,126,031	30,087,089		127,213,120
	관리비	88,816,125	207,111,364		16,155,347	312,082,836
	기타비용	723,353,139	19,623,453		256,016	743,232,608
	계	893,226,118	883,880,160	221,381,677	189,690,484	2,188,178,439
매출(a)-비용(b)		-527,162,272	774,147,640	126,674,268	33,313,856	406,973,492
전년 외상매입 잔액			18,379,981			18,379,981
금년 매입액			121,721,021			121,721,021
금년 결제액			125,174,712			125,174,712
외상매입 잔액			14,926,290			14,926,290
전년 차입금		205,631,545				205,631,545
금년 차입액		0				0
차입금상환액		205,631,545				205,631,545
차입금 총액		0				0
출자금 신규 및 증좌		7,645,000				7,645,000
출자금 환급		11,850,000				11,850,000
출자금 수지 현황		-4,205,000				-4,205,000

*조합(사무국) 주수입 : NH투자증권 기탁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춘천 방문진료 프로젝트(춘천 수자원공사), 사회백신 프로젝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합(사무국) 기타수입 : 잡이익, 후원금, 일자리사업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등

***목표매출액(1,248,000,000원) 대비 178%(2,229,088,085원)**의 매출을 달성함.

- 매출신장 요인은 코로나 재택치료센터 운영, 가정간호센터 사업소 안정화, 재택의료 확대 등 에 있음.

2. 사업소별 세부 내용 보고

① 밝음의원+가정간호센터+코로나 재택치료

구분	밝음의원 매출						가정간호 매출
	밝음의원 (급여)	밝음의원 (비급여)	검진수입 (건강+암)	코로나 재택치료	기타수입	계	
1월	22,602,240	5,338,020	488,190		5,491,380	33,919,830	28,736,290
2월	21,005,240	4,353,530	0	53,619,440	15,486,370	94,464,580	25,939,710
3월	33,266,560	4,278,710	0	791,802,600	6,082,670	835,430,540	24,586,740
4월	36,933,430	4,758,230	114,580	210,148,240	11,521,190	263,475,670	23,997,080
5월	27,718,000	4,683,430	107,530	61,945,440	7,190,790	101,645,190	25,050,980
6월	29,907,980	2,388,390	338,620	1,082,380	8,795,410	42,512,780	24,842,360
7월	33,715,470	2,810,800	59,500		4,431,410	41,017,180	27,596,560
8월	26,596,090	4,443,770	396,140		7,599,460	39,035,460	31,875,480
9월	30,006,010	4,300,060	99,030		5,009,600	39,414,700	33,207,970
10월	36,288,800	9,715,000	215,980		8,650,160	54,869,940	33,393,515
11월	31,554,920	7,057,740	424,470		14,469,280	53,506,410	35,084,360
12월	31,429,740	8,065,780	358,190		18,881,810	58,735,520	33,744,900
총계	**361,024,480**	**62,193,460**	**2,602,230**	**1,118,598,100**	**113,609,530**	**1,658,027,800**	**348,055,945**

1) 비급여진료 : 일반진료

2) 건강검진수입 = 건강검진+암검진 *코로나 재택치료 제외 시 매출: 539,429,700원

3) 기타수입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독감 및 예방접종+촉탁의비용(요양원)

*촉탁기관현황 : 천사(46), 보훈(50), 로얄(70), 영월(47), 다현(50), 산고대(20)

구분	3)기타수입내역				
	촉탁의	장애인지원금	금연지원금	의사소견서, 간호지시서, 예방접종	계
1월	4,917,680	43,000	26,780	503,920	5,491,380
2월	4,320,610	6,450	14,290	11,145,020	15,486,370
3월	2,781,830	226,700	106,560	2,967,580	6,082,670
4월	7,099,920	69,250	106,860	4,245,160	11,521,190
5월	5,719,430	14,250	53,950	1,403,160	7,190,790
6월	3,743,210	171,700	24,980	4,855,520	8,795,410
7월	3,917,870	99,800	69,740	344,000	4,431,410
8월	3,937,290	99,150	116,900	3,446,120	7,599,460
9월	3,990,710	128,350	0	890,540	5,009,600
10월	3,723,850	137,000	42,870	4,746,440	8,650,160
11월	2,789,840	142,000	37,120	11,500,320	14,469,280
12월	9,641,790	105,350	46,910	9,087,760	18,881,810
총계	**56,584,030**	**1,243,000**	**646,960**	**55,135,540**	**113,609,530**

4) 왕진 현황 : 총 338건 / 월 평균 28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5	21	31	30	17	36	32	26	29	43	27	31

5) 장애인주치의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포괄평가	1	2	1	4	3	-	3	8	-	6	10	5
교육상담	5	11	6	10	6	15	7	5	3	12	12	11
방문진료	3	6	4	3	3	-	3	2	2	7	6	9
방문간호	9	10	7	3	3	5	2	3	1	18	15	15
합계	**18**	**29**	**17**	**20**	**15**	**20**	**15**	**18**	**6**	**43**	**43**	**40**

6)방문간호 현황(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	7	7	8	9	9	10	11	10	4	2	4	**83**

7)가정간호센터 현황(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강릉	요양원	230	210	200	220	233	211	215	247	225	230	212	309	**2,742**
원주	요양원	229	217	214	239	212	244	247	297	341	387	374	303	**3,304**
	재가	5	4	6	0	0	4	23	15	21	25	28	22	**153**

* 원주 협약기관(19개소, 재가 12명)

우리믿음요양센터, 소망요양원, 흥업요양원, 행복요양원, 평심원노인요양원, 믿음요양원, 소담 요양원, 가온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휴요양원, 성문노인전문요양원, 보훈요양원, 산고대노인요양센터, 천사요양원, 행복마을요양원, 모아요양원, 우리요양원, 영월군노인요양원, 로얄요양원

* 강릉 협약기관(30개소)

참좋은마을요양원, 에이플러스 홈 노인의료복지시설, 다금요양원, 강릉무지개마을, 강릉부모사랑, 강릉부모사랑2, 다솜요양원, 우리요양원, 이든요양원, 마루요양원, 강릉 사랑의 뜰안 요양원, 가정강릉요양원, 가애노인요양시설, 은영노인요양시설, 임영요양원, 효담요양원, 강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덕실리요양원, 사천요양원, 노인요양원 율, 갈바리 노인 요양원, 정한요양원, 소돌요양원, 주문진요양원, 강동요양원, 행복마을요양원, 우리시니어스요양시설, 포도나무요양원, 나래요양원, 은평요양원

② 치료-검사-검진 세부 현황

월	골밀도	초음파	X-RAY	검진
1월	7		66	2
2월	6		47	5
3월	8		374	5
4월	12		174	12
5월	18		64	10
6월	19		68	17
7월	22		56	11
8월	17		33	15
9월	27		57	19
10월	19		52	21
11월	15		49	16
12월	13		51	31
합계	183		1,091	164

③ 환자 수 등 세부 내역

	환자수									요양원						
	초진	재진	계	보험	빈의자	보호	일반	계	노숙인쉼터	상지	천사	산고대	다현	보훈	로얄	계
1월	107	1,771	1,878	1,101	69	354	354	1,878	77	94	20	17	75	112	-	318
2월	93	2,245	2,338	1,620	61	408	249	2,338	54	80	40	37	75	84	-	316
3월	333	11,484	11,817	9,934	63	708	184	11,817	64	89	61	20	83	76	-	329
4월	259	4,363	4,622	3,711	66	554	291	4,622	70	63	49	34	38	106	-	290
5월	56	2,482	2,538	1,722	81	450	285	2,538	76	-	81	24	71	39	-	215
6월	64	1,715	1,779	1,087	66	365	261	1,779	78	-	77	28	82	51	-	238
7월	38	1,728	1,766	1,118	67	364	217	1,766	63	-	61	22	71	73	-	227
8월	82	1,761	1,843	1,168	56	349	270	1,843	62	-	80	30	77	76	-	263
9월	79	1,947	2,026	1,235	58	398	335	2,026	73	-	65	38	107	54	-	264
10월	148	2,604	2,750	1,317	59	438	936	2,750	85	-	78	10	89	65	-	242
11월	127	2,338	2,465	1,321	66	451	627	2,465	64	-	42	11	56	82	-	243
12월	43	2,189	2,232	1,243	53	495	441	2,232	71	-	41	14	48	86	77	266
합계	1,429	36,627	38,054	26,577	765	5,334	4,450	38,054	837	326	695	285	872	904	77	3,211

- 조합원 이용 현황 : 조합원(조합원), 비조합원(비조), 준조합원(준조)

	조합원수				검진건수				골밀도			x-ray			
	조합원	비조	준조	계	검진	암	일반	계	조합원	비조	계	특수(조)	특수(비)	일반	계
1월	379	1,460	39	1,878			2	2	1	6	7			66	66
2월	356	1,960	22	2,338			5	5	4	2	6			47	47
3월	392	11,418	6	11,817	1		5	6	1	7	8			374	374
4월	444	4,158	20	4,622	2		10	12	6	6	12			174	174
5월	425	2,095	18	2,538	6		4	10	8	10	18			64	64
6월	377	1,377	25	1,779	6		11	17	8	11	19			68	68
7월	415	1,333	18	1,766	8		3	11	11	11	22			56	56
8월	423	1,398	22	1,843	7		8	15	11	6	17			33	33
9월	424	1,550	52	2,026	4		15	19	15	12	27			57	57
10월	691	1,920	139	2,750	9		12	21	12	7	19			52	52
11월	535	1,873	57	2,465	12		4	16	6	9	15			49	49
12월	437	1,752	34	2,232	25		6	31	9	4	13			51	51
합계	5,298	32,294	452	38,054	80		85	165	92	91	183			1,091	1,091

※2~5월의 비조합원은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포함됨.

- 치료 현황

	기타					골다공증				호르몬		
월	치료	영양제	알부민	타나민	히루안	엘카니	본비바	프로이반	프롤리아	푸라몬	에나스테론	합계
1월	104	15		25	11		4		12			171
2월	103	16		25	17		7		6	2		176
3월	143	24		18	5		10		12			212
4월	136	49		48	18		5		9	1		266
5월	142	31		29	11		7		11	1		232
6월	113	25	1	27	14		6		11	1		198
7월	148	21		23	11		5		23	2		233
8월	96	42		28	3		6		14	2		191
9월	101	68		17	4		3		18	3		214
10월	110	70		35	13		1		12	1		242
11월	148	24		28	9		5		12	2		228
12월	103	25		32	13		2		19	1		195
월평균	120	34	1	27	11		5		13	2		213

④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매출현황

구분	요양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환수액	소계	기타 (장기근속 장려금)	총계
1월	17,889,430	200,170	719,660		18,809,260	240,000	19,049,260
2월	17,643,050	200,170	752,270		18,595,490	240,000	18,835,490
3월	20,157,470	246,580	752,700		21,156,750	275,740	21,432,490
4월	22,464,070	196,450	953,520		23,614,040	180,000	23,794,040
5월	22,048,710	196,450	874,170		23,119,330	180,000	23,299,330
6월	21,703,280	245,570	818,490		22,767,340	180,000	22,947,340
7월	19,806,600	199,110	774,810		20,780,520	180,000	20,960,520
8월	17,265,310	251,660	506,550		18,023,520	180,000	18,203,520
9월	13,453,430	201,330	598,650		14,253,410	180,000	14,433,410
10월	10,680,580	221,200	530,920		11,432,700	80,000	11,512,700
11월	15,309,240	204,040	279,780		15,793,060	1,022,480	16,815,540
12월	15,526,760	209,450		-4,195,510	11,540,700	180,000	11,720,700
총계	213,947,930	2,572,180	7,561,520		219,886,120	3,118,220	223,004,340

※환수액 사유 : 시설장 근무 변동 미신고에 따른 착오 청구금 환수(19년도 3, 4월)

1)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현황

서비스구분(월)		방문요양(명)	방문간호(명)	방문목욕(명)
월별 이용 인원수 (연인원/명)	1	16	8	1
	2	17	7	1
	3	20	9	1
	4	21	8	1
	5	21	9	1
	6	21	7	1
	7	19	7	1
	8	19	6	1
	9	17	5	1
	10	14	4	1
	11	15	4	1
	12	15		1
월평균인원		18	7	1

2)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실 인원(요양+간호+목욕)

월별 서비스 대상자 인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	23	24	24	25	25	22	23	20	17	18	15

3) 방문요양 및 간호서비스 신규계약 및 종결현황

구 분	신규계약	해지(시설입소포함)	사 망
방문요양	최○녀, 김○복, 김○옥, 정○용, 이○, 강○희, 윤○성, 한○석, 이○원, 한○석, 김○정, 김○자, 김○식	차○기, 어○, 신○재, 정○숙,김○일,윤○성, 김○옥, 강○희, 곽○수	이○,김○복,나○찬, 정○용
방문간호	서○간, 김○환, 조○도, 정○용, 이○,함○길	서○간, 이○상, 함○길, 조○도, 전○수	기○진,이○

3. 조합원 이용현황

구분	밝음의원			
	조합원	비조합원	소계	조합원이용률(%)
1월	379	1,460	1,839	20
2월	356	1,960	2,316	15
3월	392	11,418	11,810	3
4월	444	4,158	4,602	10
5월	425	2,095	2,520	17
6월	377	1,377	1,754	21
7월	415	1,333	1,748	24
8월	423	1,398	1,821	23
9월	424	1,550	1,974	21
10월	691	1920	2,611	26
11월	535	1873	2,408	22
12월	437	1752	2,189	20
총계	5,298	32,294	37,592	18.5%

※2~5월 코로나 재택치료센터 대상자(비조합원)반영에 따른 조합원 이용률 떨어짐.

4. 환자구성율(건강취약계층 지원)

구분		의원					길동무		
		전체	고령	의료보호	빈의자	일반	전체	의료보호	일반
1월	인원	1,975	1,198	354	69	354	22	5	17
	구성율(%)	100%	61%	18%	3%	18%	100%	23%	77%
2월	인원	2,007	1,289	408	61	249	23	5	18
	구성율(%)	100%	64%	20%	4%	12%	100%	22%	78%
3월	인원	4,272	3,317	708	63	184	24	8	16
	구성율(%)	100%	78%	16%	2%	4%	100%	33%	67%
4월	인원	2,824	1,913	554	66	291	24	6	18
	구성율(%)	100%	68%	20%	2%	10%	100%	25%	75%
5월	인원	2,266	1,450	450	81	285	25	7	18
	구성율(%)	100%	64%	20%	3%	13%	100%	28%	72%
6월	인원	1,834	1,142	365	66	261	25	7	18
	구성율(%)	100%	62%	20%	4%	14%	100%	28%	72%
7월	인원	1,906	1,258	364	67	217	22	6	16
	구성율(%)	100%	66%	19%	4%	11%	100%	27%	73%
8월	인원	1,869	1,194	349	56	270	21	6	15
	구성율(%)	100%	64%	19%	3%	14%	100%	29%	71%
9월	인원	2,077	1,286	398	58	335	20	4	16
	구성율(%)	100%	62%	19%	3%	16%	100%	20%	80%
10월	인원	3,160	1,727	438	59	936	17	4	13
	구성율(%)	100%	55%	14%	2%	29%	100%	24%	76%
11월	인원	2,726	1,582	451	66	627	18	4	14
	구성율(%)	100%	58%	16%	3%	23%	100%	22%	78%
12월	인원	2,426	1,437	495	53	441	15	3	12
	구성율(%)	100%	60%	20%	2%	18%	100%	20%	80%

※취약계층 : 5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5. 출자금 현황

	출자액	반환액	잔액	출자금총액
1월	580,000	50,000	530,000	298,327,374
2월	490,000	1,040,000	-550,000	297,777,374
3월	1,020,000	50,000	970,000	298,747,374
4월	765,000	0	765,000	299,512,374
5월	700,000	10,050,000	-9,350,000	290,162,374
6월	520,000	100,000	420,000	290,582,374
7월	710,000	50,000	660,000	291,242,374
8월	700,000	0	700,000	291,942,374
9월	940,000	0	940,000	292,882,374
10월	420,000	50,000	370,000	293,252,374
11월	480,000	200,000	280,000	293,532,374
12월	320,000	260,000	60,000	293,592,374
누계	**7,645,000**	**11,850,000**	**-4,205,000**	**293,592,374**

6. 조합원 현황

- 22년 가입 : 102명 / 22년 말 기준 : 총 1,529명
- 탈퇴 : 13명

조합원 탈퇴 현황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2.01.21	서○현	60086	50,000	거주지이전
2	2022.02.10	나○분	200023	10,000	요양원입소
3	2022.02.11	이○희	100293	1,030,000	이용안함
4	2022.03.08	김○분	170015	50,000	이용안함
5	2022.05.06	김○주	210009	50,000	거주지 이전
6	2022.06.16	정○희	110037	50,000	거주지 이전
7	2022.06.24	김○웅	140090	50,000	이용안함
8	2022.07.20	정○숙	220056	50,000	이용안함
9	2022.10.28	이○인	220094	50,000	이용안함
10	2022.11.24	채○남	30095	200,000	이용안함
11	2022.12.01	박○웅	210068	50,000	거주지 이전
12	2022.12.16	장○현	220075	50,000	사망
13	2022.12.21	권○숙	30149	160,000	이용안함
합계				1,850,000	

- 제명조합원(환급), 감좌신청 : 3명(제명 2명+ 감좌신청1명)

조합원 제명, 감좌 현황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2.03.21	이○범	060004	30,000	이용안함
2	2022.05.09	권○중	20085	100,000	이용안함
3	2022.05.24	최○진	20002	10,000,000	감좌
합계				10,130,000	

- 조합원 지분양도 : 1명(사망 및 기타 사유) 명단(1명)

조합원 지분양도 현황						
NO.	양도일	양도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양도금액	양수 조합원명	관계
1	2022.09.27	최○호	020357	200,000	안○순	처

7. 2022년 예산 대비 집행 실적

장	관	항	목	2022년 예산액		집행액	달성율 (%)	세부내역 (천원, 개월)
1. 매출액				1,248,000,000		2,229,088,085	178.6%	
	의료사업부			1,008,000,000		2,006,083,745	199.0%	
		밝음의원		744,000,000		1,658,027,800	222.9%	
		가정간호센터		264,000,000		348,055,945	131.8%	
		우리동네						
	재가장기요양사업부			240,000,000		223,004,340	92.9%	
		길동무		240,000,000		223,004,340	92.9%	
	기타수입							
2. 매출원가								
3. 수입(매출총이익)				1,248,000,000		2,229,088,085	178.6%	
4. 지출				1,244,950,000		1,444,945,831	116.1%	
	관리비			1,206,150,000		1,385,367,632	114.9%	
		인건비		751,400,000		1,005,649,875	133.8%	
			임원보수			14,800,000		이사장 부이사장 상여금 : 2,400,000 상근 임원 보수 : 10,000,000
			직원급여 (조합,의원)	720,000,000		989,264,978	134.6%	의원(15명) : 737,404,060 조합(2명) : 74,946,700 통합돌봄(3명) : 176,914,218
			직원급여(길동무)	190,000,000		167,775,750	88.3%	
			(인건비지원금)	(201,600,000)		(199,786,088)	99.1%	통합돌봄(3명) : 182,586,088 농촌건강지원사업(1명): 13,000,000 사회백신(1명): 4,200,000
			퇴직급여	43,000,000		33,595,235	78.1%	
		일반경비			323,750,000	222,458,327	68.7%	
			복리후생비	64,000,000		70,314,880	109.9%	사회보험료 임직원 식대 선물 등 임직원 진료비 임직원 경조사비 길동무 의복비, 선물 등
			여비교통비	10,000,000		2,632,100	26.3%	
			접대비	3,500,000		2,916,700	83.3%	

			통신비	7,400,000		9,015,920	121.8%	문자충전, 조합통신비 업무폰 요금 등
			수도광열비	9,500,000		10,129,213	106.6%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의원, 원룸)
			세금과공과	37,700,000		45,196,920	119.9%	의료급여법위반과징금 : 44,682,280 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자동차세등:514,640
			감가상각비	14,000,000		14,596,504	104.3%	
			지급임차료	18,000,000		18,081,800	100.5%	조합 임차료 등
			수선비	300,000		1,564,500	521.5%	에어컨, 남자화장실보일러 수리 등
			보험료	3,000,000		4,091,656	136.4%	법인 차량 자동차 보험 : 1,826,370 의료배상공제:1,065,000 길동무배상책임보험:1,200,286
			차량유지비	5,600,000		5,399,000	96.4%	법인 차량 정기 주차료, 유류대, 소모품 등
			운반비	500,000		895,000	179%	가정간호 의료소모품 발송 등
			도서인쇄비	4,000,000		1,762,500	44.1%	명함, 도서, 배너, 각종 교재, 출자증서 제작 등 신문구독료:495,000
			소모품비	6,000,000		11,175,480	186.3%	각종 문구류, 소모품 등 복합기 토너 등 사무용품
			지급수수료	12,000,000		17,659,139	147.2%	법인 결산 수수료 MRM사용료 더존프로그램 CMS관련 수수료 홈페이지 수수료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길동무이지케어사용료 의원닉스펜사용 등 카드가맹점관련수수료 기타각종수수료
			조합이전비	120,000,000		-		
			광고선전비	3,000,000		1,718,000	57.3%	의원 구인(의사) 광고 : 660,000 조합광고:550,000 길동무구인(요양보호사)광고:508,000
			대손상각비			26,875		

			건물관리비	5,000,000		3,636,260	72.7%	의원(3층) , 아파트 관리비 등
			무형고정자산상각	200,000		166,980	83.5%	
			잡비			209,900		조합원배상치료비(홍이화) : 171,400 기타잡비:38,500
			경조사비	500,000		1,269,000	2,538%	
		의료경비			131,000,000	157,259,430	120.0%	
			양방의약품비	90,000,000		97,025,297	107.8%	
			양방의료 소모품비	24,000,000		30,187,823	125.8%	의원, 가정간호물품 등
			외주용역비	17,000,000		30,046,310	176.7%	검사료 ,의료폐기물처리비 방역비 등
	사업비				27,800,000	59,578,199	214.3%	
		기획정책활동비			16,300,000	20,733,080	127.2%	
			강사료	2,000,000		8,998,290	449.9%	양승완(방문재활) : 6,800,000 임동란(대진의):2,083,270 송준규(사회백신):115,020
			교육훈련비	3,800,000		2,534,420	66.7%	길동무 : 1,189,420 의원 : 825,000 조합 : 520,000
			회의비	2,500,000		4,056,210	162.2%	
			연대활동비	8,000,000		5,144,160	64.3%	한국의료복지사협 회비 : 2,762,500 강원돌봄네트워크회비: 600,000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회비:504,000 원주사회적기업협의회회비:220,000 문화의거리상인회회비:120,000 기타각종행사참가관련:937,660
		조직활동비			11,500,000	38,845,119	337.8%	
			20주년기념행사	5,000,000		28,236,700	564.7%	20주년 기획 및 운영비 : 12,320,000 20주년아카이빙: 8,540,000 20주년기념선물및상품권 등:7,376,700

			조직지원사업	6,500,000		10,608,419	163.2%	임직원 워크샵 : 4,451,340 돌봄의모든것활동비: 2,556,879 총회관련선물:2,517,500 신규조합원선물:1,082,700
	예비비			11,000,000				
5.영업이익					3,050,000	784,142,254	25,709%	
6.영업외수익					343,950,000	366,063,846	106.4%	
	지원금수입(조직활동비)				296,400,000	287,947,037	97.1%	
		농촌건강사업지원		36,400,000		30,687,750	84.3%	
		통합돌봄(춘천)		230,000,000		230,792,713	100.3%	
		사회백신프로젝트		30,000,000		26,466,574	88.2%	
	기타수입				47,550,000	78,116,809	164.3%	
		이자 및 배당금수익		250,000		5,826,582	2,330.6%	예적금 만기이자 : 5,421,314 이자및캐쉬백:405,268
		유형자산처분이익				499,000		차량매각관련(SM3)
		후원금		10,000,000		12,307,000	123.1%	
		일자리사업지원금		28,900,000		48,802,710	168.9%	청년점프업일경험 및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 29,600,000 육아휴직관련지원금:10,324,190 재가의료급여(생활보장과):5,141,600 인턴형일경험프로그램지원금:3,736,920
		장애인고용촉진 지원금		5,400,000		5,400,000	100%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경로장애인과)
		잡이익		3,000,000		5,281,517	176.1%	코로나19 유급휴가비 : 2,914,700 고혈압적정성평가인센티브:2,100,000 기타:266,817
7.영업외비용					313,400,000	743,232,608	237.2%	
	지원금지출(조직활동비)				296,400,000	287,947,037	97.1%	
		농촌건강사업지원		36,400,000		30,687,750	84.3%	
		통합돌봄(춘천)		230,000,000		230,792,713	100.3%	
		사회백신프로젝트		30,000,000		26,466,574	88.2%	
	기타지출				17,000,000	455,285,571	2,678%	

		이자비용	6,000,000		2,363,210	39.4%	장기차입금(박준영)이자 : 1,304,217 상승자금대출이자: 1,000,000 기타:58,993
		기부금			33,840,000		한국의료복지사협 : 12,000,0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10,840,000 드림캠프:10,000,000 원주나눔의집:1,000,000
		지역복지사업비	10,000,000		5,802,660	58%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406,973,491		
		유형자산처분손실			1,342,617		고정자산(에어컨 등) 매각분 : 1,236,762 고정자산폐기분:105,855
		잡손실	1,000,000		4,963,593	496.4%	미지급급여 및 외상매출금(길동무) 처리 : 2,435,996 법인핸드폰해지위약금:1,891,000 우리동네인터넷해지및정수기해지위약금:550,605 기타:85,992
8.법인세차감전이익				33,600,000	406,973,492		
9.법인세등							
10.당기순이익				33,600,000	406,973,492		

- 집행율(12월까지) 100%가 정상임.

※ 2월 경 코로나 재택치료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으로 매출 신장이 크게 발생함을 참고.

※ 매출 달성율 내역

- 밝음의원(222.9%) : 코로나 재택치료기관, 재택의료서비스 등
- 가정간호센터(131.8%) : 가정간호센터장 충원에 따른 매출 신장(현재 원주 2명, 강릉 1명)

※ 집행율 초과 내역

- 급여(조합, 의원(134.6%)) : 급여 외 재택치료기관 성과 인센티브 지급 등 증가
- 수선비(521.5%) : 에어컨 수리, 남자화장실 온수보일러 수리 등
- 강사료(449.9%) : 방문재활사업, 대진의(임동란) 수당 등
- 20주년 기념행사(564.7%) : 기념식 및 기념 포럼 등 확대 개최에 따른 비용 증가
- 기부금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1,084만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1,200만원), 드림캠프(10,000만원), 원주나눔의집(100만원) 등 기부

■ 재무 보고

재 무 상 태 표

제 21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1(당)기 금 액		제20(전)기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998,143,426		285,225,349
(1) 당 좌 자 산		998,143,426		284,383,359
보 통 예 금	216,714,734		106,382,623	
국 고 보 조 금-보통예금		216,714,734	14,000,000	92,382,623
정 기 예 . 적 금		580,000,000		100,000,000
외 상 매 출 금	95,055,740		92,368,212	
대 손 충 당 금	950,557	94,105,183	923,682	91,444,530
미 수 금		1,655,340		0
선 급 금		536,099		41,720
선 급 비 용		0		514,486
선 납 세 금		105,132,070		0
(2) 재 고 자 산		0		841,990
후 원 물 품		0		841,990
Ⅱ. 비 유 동 자 산		53,601,780		85,388,210
(1) 투 자 자 산		9,966,864		7,366,864
장 기 성 예 금		600,000		0
특 정 현 금 과 예 금		7,366,864		7,366,864
출 자 금		2,000,000		0
(2) 유 형 자 산		29,980,846		61,193,296
구 축 물	27,941,840		27,941,84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7,928,840	13,000	27,928,840	13,000
차 량 운 반 구	17,051,500		10,746,860	
국 고 보조금-차량운반구	5,399,164		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67,083	9,585,253	7,812,943	2,933,917
비 품	183,251,709		216,214,069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75,993,637		175,485,184	
국 고 보 조 금 - 비 품		7,258,072	10,000	40,718,885
의 료 장 비	208,257,250		208,907,25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8,248,250		201,836,563	
국 고 보 조 금-의료장비		9,000	3,013,533	4,057,154
의 료 기 기 - 우 리동네	9,980,000		11,73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9,972,000	8,000	11,721,000	9,000
의 료 기 기 - 밝 음의원	104,446,880		98,95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91,339,359	13,107,521	85,488,660	13,461,340
(3) 무 형 자 산		554,070		728,050
소 프 트 웨 어		0		6,000
전 기 공 급 시 설이용권		554,070		722,05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3,100,000		16,100,000
일 차 보 증 금		13,000,000		16,000,000

재 무 상 태 표

제 21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1(당)기 금 액		제20(전)기 금 액	
전신전화가입권		100,000		100,000
자 산 총 계		**1,051,745,206**		**370,613,559**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56,203,711**		**179,594,518**
외상매입금		14,926,290		18,379,981
미지급금		61,316,269		137,049,111
예수금		8,924,610		7,726,290
선수금		171,036,542		16,439,136
Ⅱ. 비 유 동 부 채		**640,360,795**		**414,229,124**
장기차입금		0		205,631,545
퇴직급여충당부채		233,387,304		208,597,57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06,973,491		0
부 채 총 계		**896,564,506**		**593,823,642**
자 본				
Ⅰ. 자 본 금		**293,542,374**		**297,797,374**
출자금		293,542,374		297,797,374
Ⅱ. 자본잉여금		**0**		**0**
Ⅲ. 자본조정		**0**		**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Ⅴ. 결손금		**138,361,674**		**521,007,457**
미처리결손금		**138,361,674**		**521,007,457**
(당기순이익)				
당기 : 406,973,492 원				
전기 : 16,008,634 원				
자 본 총 계		**155,180,700**		**-223,210,08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51,745,206**		**370,613,559**

손 익 계 산 서

제 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목	제21(당)기		제20(전)기	
	금액		금액	
Ⅰ. 매출액		**2,229,088,085**		**985,525,200**
밝은의원	1,658,027,800		564,861,640	
가정간호	348,055,945		203,290,100	
우리동네주치의	0		1,129,050	
길통무	223,004,340		216,244,410	
Ⅱ. 매출원가		**0**		**0**
Ⅲ. 매출총이익		**2,229,088,085**		**985,525,200**
Ⅳ. 판매비와관리비		**1,444,945,831**		**1,002,027,002**
임원급여	14,800,000		0	
직원급여	1,157,040,728		811,851,770	
(직원급여차감계정)	199,786,088		162,474,000	
퇴직급여	33,595,235		41,171,080	
강사료	8,998,290		5,790,000	
복리후생비	70,314,880		61,339,730	
여비교통비	2,632,100		8,944,400	
전대비	2,916,700		3,302,710	
통신비	9,015,920		5,222,451	
수도광열비	10,129,213		9,292,076	
세금과공과금	45,196,920		435,910	
감가상각비	14,596,504		13,693,809	
지급임차료	18,081,800		22,227,173	
수선비	1,564,500		46,500	
보험료	4,091,656		2,717,504	
차량유지비	5,399,000		5,671,031	
운반비	895,000		312,000	
교육훈련비	2,534,420		2,432,270	
도서인쇄비	1,762,500		3,278,920	
회의비	4,056,210		1,872,430	
소모품비	11,175,480		6,018,560	
지급수수료	17,659,139		16,528,952	
광고선전비	1,718,000		4,365,000	
대손상각비	26,875		-209,021	
건물관리비	3,636,260		1,362,320	
무형고정자산상각	166,980		166,980	
잡비	209,900		0	

손 익 계 산 서

제 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1(당)기		제20(전)기	
	금	액	금	액
경조사비	1,269,000		250,000	
조직활동비	38,845,119		2,658,000	
기획정책활동비	5,144,160		7,149,100	
양방의약품비	97,025,297		90,382,669	
양방의료소모품비	30,187,823		19,197,198	
외주용역비	30,046,310		17,029,480	
V. 영업이익		**784,142,254**		**-16,501,802**
VI. 영업외수익		**366,063,846**		**286,648,528**
이자수익	5,826,582		219,765	
배당금수익	0		30,335	
유형자산처분이익	499,000		0	
농촌건강사업지원금	30,687,750		32,063,974	
사업비	257,259,287		207,080,440	
후원금	12,307,000		13,934,000	
인건비지원금	5,400,000		4,950,000	
지원금	48,802,710		23,622,480	
잡이익	5,281,517		4,747,534	
VII. 영업외비용		**743,232,608**		**254,138,092**
이자비용	2,363,210		4,172,104	
기부금	33,840,000		0	
지역복지사업비	5,802,660		9,777,6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06,973,491		0	
유형자산처분손실	1,342,617		0	
농촌건강사업비	30,687,750		32,063,974	
사업비	257,259,287		207,080,440	
잡손실	4,963,593		1,043,954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406,973,492**		**16,008,634**
IX. 법인세등		**0**		**0**
X. 당기순이익		**406,973,492**		**16,008,634**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1(당)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20(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22년 03월 31일

회사명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 21(당)기		제 20(전)기	
	금 액		금 액	
Ⅰ. 미 처 리 결 손 금		**138,361,674**		**521,007,457**
1. 전 기 이 월 미처리결손금	521,007,457		537,016,091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0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24,327,709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이 익	406,973,492		16,008,634	
Ⅱ. 결 손 금 처 리 액		**0**		**0**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0		0	
2. 기 타 법 정 적 립 금 이 입 액	0		0	
3.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0		0	
4. 재 평 가 적 립 금 이 입 액	0		0	
5. 자 본 준 비 금 이 입 액	0		0	
Ⅲ.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0**		**0**
1. 이 익 준 비 금	0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금	0		0	
가. 현 금 배 당	0		0	
나. 주 식 배 당	0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0	
Ⅳ. 차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138,361,674**		**521,007,457**

■ 22년 주요 활동

1. 조합(사무국)

- 1월 6일 조합 신년회 점심(교육장)
- 1월 12일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방문구강관리사업 협력 지원)
- 2월 16일 강원 SE 상승 자금 대출 모니터링 방문(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상진 본부장)
- 3월 8일 2021년 조합 종합감사(박찬현·정연우 감사, 박준영, 신승훈)
- 3월 10일 건강보험공단 실사요양급여비 환수 결정통보(8,571,910원)
- 3월 15일 제179차(사협60차) 이사회
- 3월 24일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20차)
- 3월 28일 조합 전직원 회의(21년도 조합 활동 평가 및 22년 계획 추진 관련)
- 3월 29일 비전위원회(2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7명 참석)
- 4월 12일 비전위원회 제2차 회의(7명 참석)
- 5월 3일 비전위원회 제3차 회의(7명 참석)
- 5월 4일 20주년 기념 꽃씨 나눔 행사 실시
- 5월 6일 주식회사 우리마더봉교육 업무협약 체결
- 5월 6일 씨앗재단 방문의료사업 서류 제출
- 5월 17일 인덕의료재단 경도요양병원 견학(박준영, 천혜란, 신승훈)
- 5월 19일 제180차(사협61차) 이사회
- 5월 31일 비전위원회 제4차 회의(7명 참석)
- 6월 17일 라이프케어 간담회 참석(상지대학교)
- 6월 23일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주년 기념 포럼(상지대학교 본관 5층)
- 6월 29일 20주년 기념 임직원 전체 회식(우리집을 못찾겠네요)
- 7월 6일 레이 법인차량 자동차 검사 진행
- 7월 12일 원주아이쿱 협업 사업 관련 회의(상지대학교, 이사장, 신승훈)
- 7월 14일 주식회사 정션메드 업무협약식 체결
 (만성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전문가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7월 20일 제181차(사협62차) 이사회
- 7월 21일 메디푸드 미팅(장동한 대표, 고령친화식품 연계 관련)
- 8월 9일 노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수행기관 간담회 참석
 (경로장애인과, 복지관 등)
- 8월 11일, 22일 신규 조합원 설명회
- 8월 9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2차 년도 사업 서류 제출(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8월 29일 상반기 감사 진행
- 9월 2일, 14일, 28일 아이행복마을 간호학생 교육
- 9월 26일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합 탐방

- 9월 29일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합 탐방
- 9월 30일 2022 임직원 워크샵(단양 일대, 12명 참석)
- 10월 5일 제182차(사협63차) 이사회
- 12월 5일 조주희 활동가 출근
- 12월 8일 임원 워크샵
- 12월 19일 강원도사회적경제한마당, 김종희 원장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상”
- 12월 21일 의료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워크숍 참석(이사장)
- 12월 29일 강원고령자협동조합 업무협약

2. 밝음의원(가정간호센터, 재택의료팀)

- 1월 6일 원장단 회의
- 2월 3일 최유진 간호사 면접(안의현 팀장 출산, 육아 휴가에 따른 채용)
- 2월 4일 코로나 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참여 신청(시작일 : 2월 7일)
- 2월 7일 김진숙 간호조무사 면접(원주시 사회적경제 점프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2월 14일 최유진 간호사 출근
- 2월 23일 ~ 3월 18일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비대면 모니터링 담당자 채용(11명)
- 3월 15일 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팀 미팅(방문의료서비스 관련)
- 3월 23일 원장단 회의
- 3월 29일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보훈요양원 미팅(미수금 관련)
- 4월 18일 롱코비드 극복기원 건강돌봄 이벤트 실시
- 4월 20일 과징금 6,204,000원 납부(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4월 28일 원장단 회의
- 5월 3일 배순찬 가정간호사 면접
- 6월 9일 가정간호센터 전체 회의
- 6월 10일 정션메드 케어봄(어플) 미팅
- 6월 13일 코로나 19 유공 포상 표창패 수상(강원도지사,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
- 6월 16일 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팀 회의(거버넌스 구축 관련)
- 6월 24일 정한요양원 가정간호 협약
- 7월 5일 원주보훈요양원 가정간호 관련 업무 회의
- 7월 6일 원장단 회의
- 7월 20일 원주의료원 공공의료팀 미팅(장애인주치의 사업 협력 관련)
- 7월 21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관련 회의(도담내과, 고려가정의원, 창문외과 등)
- 7월 27일 건강보험공단 거버넌스 회의 (만성질환관리팀)
- 8월 10일 병의원 연계형 건강 돌봄 시범사업 회의(만성질환관리팀)
- 9월 19일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커뮤니티 케어 특강 참석
 (박준영, 신승훈, 신옥경, 염은경, 최유진, 박재영, 박혜진, 배순찬)

- 10월 5일 재가의료시범사업 사례회의 (염은경)
- 10월 13일 원장단 회의
- 10월 14일 영월 노인요양원 가정간호 대면진료 (곽병은, 염은경)
- 10월 20일 환자중심 일차의료의원 모형(재택의료 포함모형) 개발 회의 (김종희)
- 10월 23일 재가의료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인터뷰 (신승훈, 염은경)
- 11월 10일 나미연 간호사 출근(가정간호센터 매니저)
- 11월 14일 재택의료서비스 사업 설명회(염은경)
- 11월 16일 원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건강교육(신승훈, 염은경)
- 11월~12월 NECA 방문의료 사업 연구 참여 (염은경, 장원주)
- 11월 30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원주시(경로장애인과))
- 12월 19일 장원주 간호사 출근(재택의료 센터)
- 12월 22일 원주의료원 공공보건의료팀 방문재활 대상자 사례 회의(염은경, 장원주)

3.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 1월 13일 김0환 어르신 방문간호 계약 체결
- 1월 18일 서0간 어르신 방문간호 계약 체결
- 1월 20일 온라인 노인인권교육 4시간 실시(줌으로 진행, 6명)
- 1월 23일 기0진 어르신 별세
- 1월 27일 어르신 구정선물 배부
- 1월 27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1월 31일 차0기 어르신 장기입원으로 계약 해지
- 2월 3일 최0녀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체결
- 2월 14일 김정옥 요양보호사 채용
- 2월 14일 어0 어르신 요양원 입소로 가족요양 계약 해지
- 2월 24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3월 4일 조0도 어르신 방문간호 계약 체결
- 3월 7일 최유진 간호사 입사
- 3월 8일 최상옥 요양보호사 채용(가족)
- 3월 7일, 24일 원주시청 지원 어르신 자가검사키트 배부
- 3월 8일 김0복 어르신 가족요양 계약 체결
- 3월 21일 김0옥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체결
- 3월 21일 정0용 어르신 방문요양, 간호 계약 체결
- 3월 22일 이0 어르신 가족요양, 간호 계약 체결
- 3월 24일 조합 지원 직원 자가검사키트 배부
- 3월 24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3월 24일 신0재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해지

- 3월 28일 홍용미 요양보호사 채용(가족)
- 3월 29일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14명)
- 4월 12일 강0희 어르신 가족요양 계약 체결
- 4월 12일 박정자 요양보호사 채용(가족)
- 4월 28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5월 6일 이0 어르신 별세
- 5월 15일 김0복 어르신 별세
- 5월 23일 윤0성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체결
- 5월 24일 원주시청 재가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 6월 2일 김영숙 요양보호사 채용
- 6월 2일 정명순 요양보호사 채용(가족)
- 6월 2일 김0일 어르신 가족요양 계약 체결
- 6월 직원복지 물품 배부(여름실내화)
- 6월 반기별 사례회의 진행
- 6월 11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8명)
- 6월 13일 차명선 요양보호사 온라인치매전문교육 신청
- 6월 17일 계지영 요양보호사 채용(가족)
- 6월 17일 한0석 어르신 가족요양 계약 체결
- 6월 30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6월 30일 직원 복지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선물 배부
- 6월 30일 서0간 어르신 방문간호 해지, 정0숙 어르신 방문요양 해지
- 7월 13일 계지영 요양보호사 온라인치매전문교육 신청
- 7월 16일 나0찬 어르신 별세
- 7월 28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7월 29일 김0일 어르신 계약 해지
- 8월 6일 정0용 어르신 별세
- 8월 10일 희망이음 zoom활용 교육(김지영)
- 8월 15일 윤0성 어르신 계약 해지
- 8월 25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9월 5일 김0옥 어르신 계약 해지
- 9월 7일 김지영 사회복지사 평가설명회 참석
- 9월 14일 이0원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체결
- 9월 18일 강0희 어르신 계약 해지
- 9월 22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9월 29일 김지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10월 13일 김0정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체결

- 10월 17일 곽0수 어르신 계약 해지
- 10월 20일 김0자 어르신 가족요양 계약 체결
- 10월 27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11월 1일 직원 포상 및 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 후 시행
- 11월 9일 조0도 어르신 방문간호 계약 해지
- 11월 반기별 사례회의 진행
- 11월 24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 11월 30일 이0상, 함0길, 전0수 방문간호 계약 해지
- 12월 15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전산 상계 차감 예정)
- 12월 20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참석
- 12월 26일 희망이음(장기요양) 연도전환 온라인교육 참석
- 12월 직원 연말 선물 배부(파스타볼)
- 12월 29일 직원 월례회의 진행(조합교육장)

4. 건강돌봄 프로젝트

① 농촌지역 건강관리(NH투자증권)

- 1월 : 연세대 작업치료학 방문재활 1회
- 2월 방문재활 참여자 재활프로그램 진행
- 2월 : 방문간호 3회, 방문재활 14회
- 3월 : 농촌대상자 맞춤형 서비스에 따른 기초 생계 지원 (유동식) 1명 지원
- 3월 : 방문간호 3회, 방문재활 17회
- 4월 : 방문간호 2회, 방문재활 19회
- 5월 : 방문간호 3회, 방문재활 26회
- 6월 : 방문간호 2회, 방문재활 3회
- 6월 22일 방문재활대상자 만족도조사 시행
- 6월 30일 NH지정기탁사업 서류 중간정리 (7차년도)
- 7월 : 방문간호 2회, 방문재활 3회
- 7월 21일 건강반장집담회 (여름철 건강관리-식중독)
- 7월 22일 사랑의 열매 방문 중간점검 (밝음의원)
- 8월 : 방문간호 3회, 방문재활 대상자 만족도 조사
- 8월 25일 건강반장집담회 (가을철 건강관리 -면역력 높이기)
- 9월 방문간호1회, NH투자증권 지정기탁사업 7차년도 사업 종료 (9월30일)
 지정기탁사업 회계처리 및 정산보고서 & 결산보고서 작성

-10월 : 지정기탁사업 정산보고서 & 결산보고서 제출 및 보완

-12월 : 농촌지역 건강관리(NH투자증권) 8차년도 사업 1차 배분지원금 지급 및 사업시작
 의약품지원 5회 , 방문재활 6회

②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월 28일 사례회의 진행
- 2월 15일 사회백신 프로젝트 사업 하반기 사업비 입금(16,750,000원)
- 3월 4일 사례회의 진행
- 4월 14일 사례회의 진행
- 5월 예산변경(사업비 세세목 변경)
- 6월 3일 사례회의 진행
- 6월 대상자,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 실행
- 7월 13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공유회 “지역돌봄과 찾아가는 간호” 개최
- 7월 28일 사례회의 진행
- 7월 사회백신 프로젝트 사업 1차년도 사업 종료(7월31일)
- 8월 9일 2차년도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신청접수
- 8월 24일 1차년도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결과보고서 제출
- 9월 2차년도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업 수행 시작(9월1일)
- 9월 2일 2차년도 조정사업계획서 제출
- 9월 7일 신규기획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춘천) 참석(김지영)
- 9월 8일 2차년도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상반기 사업비 입금(10,650,000원)
- 9월 28일 사례회의 진행
- 9월 : 방문간호 2건, 검사치료 1건
- 10월 22일 사례회의 진행
- 10월 : 방문간호 12건, 검사치료 4건
- 11월 15일 :일차의료연구회 공동방문간호 성과 발표 (염은경)
- 11월 : 방문간호 25건, 검사치료 13건
- 12월 : 방문간호 19건, 검사치료 5건

③ 춘천통합돌봄사업(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 1월 26일 22년 사업비 2억3천만원 입금

5. 조합 소모임, 건강반장
- 1월 20일 22년 건강반장 오리엔테이션(25명)
- 1월 24일 22년 신규건강반장 교육(7명)
- 2월 23일 2월 건강반장 집담회(22명)
- 3월 24일 3월 건강반장 집담회(22명)
- 4월 21일 4월 건강반장 집담회(22명)
- 5월 26일 5월 건강반장 집담회(21명)
- 6월 24일 6월 건강반장 집담회(20명)

- 7월 21일 7월 건강반장 집담회(21명)
- 8월 24일 직원 영화 모임(헌트 / 육사오)
- 8월 25일 8월 건강반장 집담회(20명)
- 8월 26일 제17회 원주장애인인권영화제 참여(재택의료 홍보)
- 9월 21일 9월 건강반장 집담회(20명)
- 11월 22일 춘천MBC 생방송 강원365 촬영 - 건강반장 활동
- 11월 23일 11월 건강반장 집담회(21명)
- 12월 7일 “20주년 기념” 돌봄의 모든 것 [PTC 따뜻한 자기돌봄 강좌 시작(총 6회차)
- 12월 16일 12월 건강반장 집담회(20명)

6.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1월 5일 경영위원회 회의(zoom) 참석(박준영, 신승훈)
- 1월 28일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신승훈)
- 2월 12일 연합회 총회 참석(이광희, 박준영, 신승훈)
- 3월 22일 경영위원회 줌회의 참석(박준영)
- 4월 16일 ~ 17일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참석(신승훈, 대구인터불고호텔)
- 6월 20일 경영위원회 참석(신승훈, 서울의료사협 교육장)
- 8월 30 ~ 31일 경영위 워크샵 참석(원주생명협동교육관, 이광희, 박준영, 신승훈)
- 11월 23일 연합회 이사회(zoom) 참석(이광희)
- 12월 20일 연합회 이사회(zoom) 참석(이광희)

7. 연대 활동 및 기타 보고

- 1월 8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연탄봉사 참여(신승훈)
- 1월 11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신승훈)
- 2월 3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신승훈)
- 2월 10일 기재부 주최 강원도 협동조합 간담회 참석(신승훈)
- 2월 25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참석(이광희, 박준영, 신승훈)
- 3월 10일 아이쿱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 참석(이광희)
- 3월 16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분야 정책간담회 줌회의 참석(신승훈)
- 3월 25일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참석(박준영)
- 3월 31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총회 참석(박준영, 신승훈)
- 4월 7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총회 참석(박준영, 신승훈, 이광희)
- 5월 26일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후원의 날 참석(신승훈)
- 6월 7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신승훈)
- 6월 8일 원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신승훈)
- 6월 14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6월 모임 참석(신승훈)

- 7월 1일 원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간행사 “티키타카” 행사 참석(신승훈)
- 7월 15일 원인동 마을관리소 성과 보고회 참석(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신승훈)
- 7월 25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계탕 봉사(신승훈)
- 8월 10일 원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신승훈)
- 8월 17일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신승훈)
- 9월 8일 호저 나눔의 집 추석 맞이 명절음식 봉사(신승훈)
- 9월 27일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비전선포식 참석
 (이광희, 박준영, 최효심, 이창호, 신옥경, 염은경)
- 9월 30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친친 워크샵 참석(신승훈)
- 10월 5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노인 돌봄 분과 회의 참석(박준영, 신승훈)
- 10월 11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10월 모임 참석(신승훈)
- 10월 12일 원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신승훈)
- 11월 3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신승훈)
- 11월 3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노인 돌봄 분과 회의 참석(박준영, 신승훈)
- 11월 14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11월 모임 참석(신승훈)
- 11월 30일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케어 분과 회의 참석(신승훈)
- 12월 9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송년회 참석(임직원)

■ 2022년 원주시의사회 “빈의자”(빈곤층 의료지원 자원봉사의사회) 지원 현황

월	월인원(명)	지원금액(원)	비고
1	68명	447,500원	
2	61명	418,310원	
3	59명	488,030원	
4	66명	314,500원	
5	77명	672,300원	
6	66명	1,569,290원	*2022년 의뢰인원 : 24명
7	66명	463,500원	- 시청 및 읍면동 17명
8	56명	456,970원	- 유관기관 7명
9	58명	387,100원	
10	60명	731,920원	
11	67명	462,310원	
12	52명	175,260원	
총계	756명	6,586,990원	

※ 밝음의원 2022년 후원금 : 1,940,300원 -> “빈의자” 초기 상담 창구로 “총무” 역할.

■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연간 지원규모 및 현황

년도	연인원	신규인원	지원금액
2014	214명	51명	11,652,620원
2015	836명	75명	16,287,080원
2016	1,103명	59명	9,673,130원
2017	832명	32명	10,361,163원
2018	1,181명	40명	12,739,050원
2019	1,215명	39명	8,872,510원
2020	1,223명	52명	10,629,830원
2021	1,180명	47명	11,066,370원
2022	756명	24명	6,586,990원
총계	8,540명	419명	97,868,743원

■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회원 단체 현황

2022년 말 현재 23개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 병원, 약국 등)

종합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원 // 병　원 : 내안에병원

의　원

원주영상의학과의원, 이규남신경과의원, 홍성국신경과의원, 김남두피부비뇨기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연세플러스비뇨기과의원, 홍기수이비후과의원, 박규래정형외과의원,
백피부과의원, 도홍림이비인후과의원, 우리들소아과의원, 최경훈내과, 창문외과,
연세민내과의원, 좋은마음정신의학과, 원주우리병원, 횡성중앙의원,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치　과 : 부부치과, 최영권치과 / 안　과 : 연세안과 / 한의원 : 경희한의원, 모아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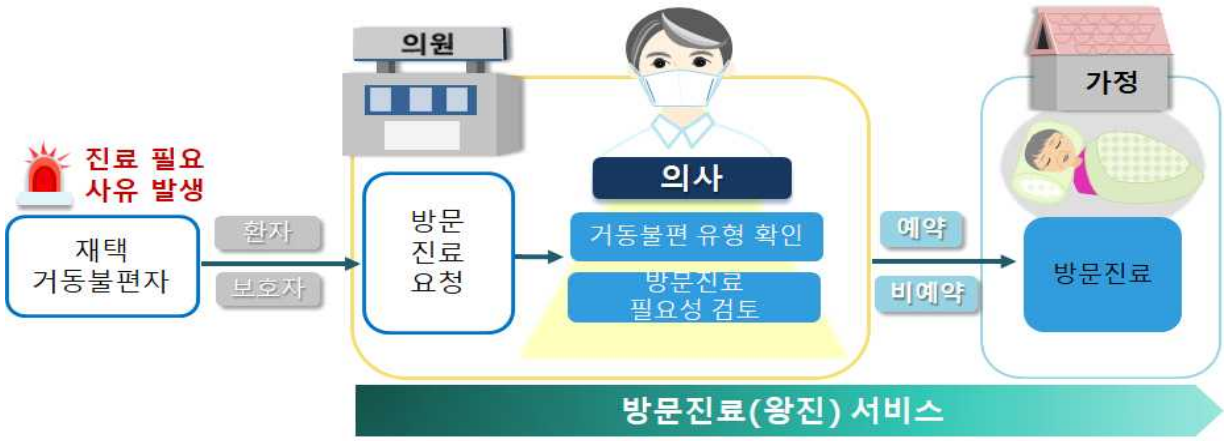
약　국 : 손약국, 아남약국

2022년 방문의료팀 활동 사업 보고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1) 사업개요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2) 사업대상

(1) (대상자)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대상자 유형(예시)】

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직후 ③ 말기 질환
④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 등

* 단,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

(2) (예외)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방문진료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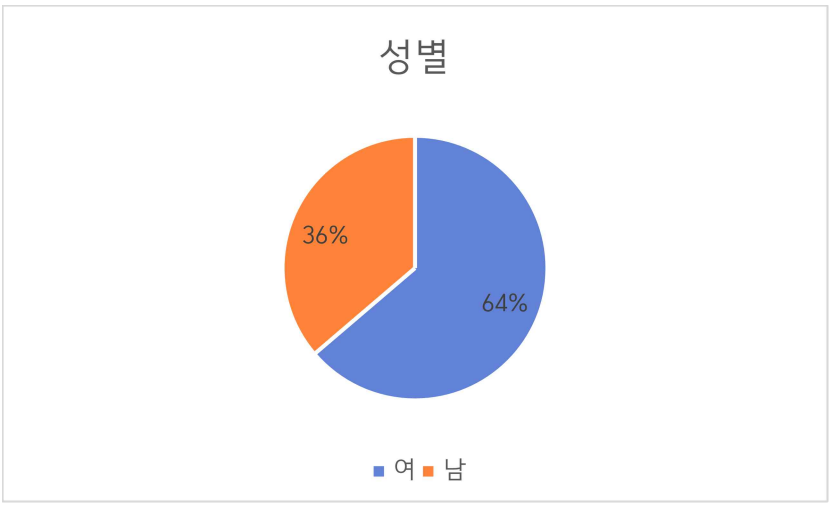
3) 방문진료 세부 서비스 내용

○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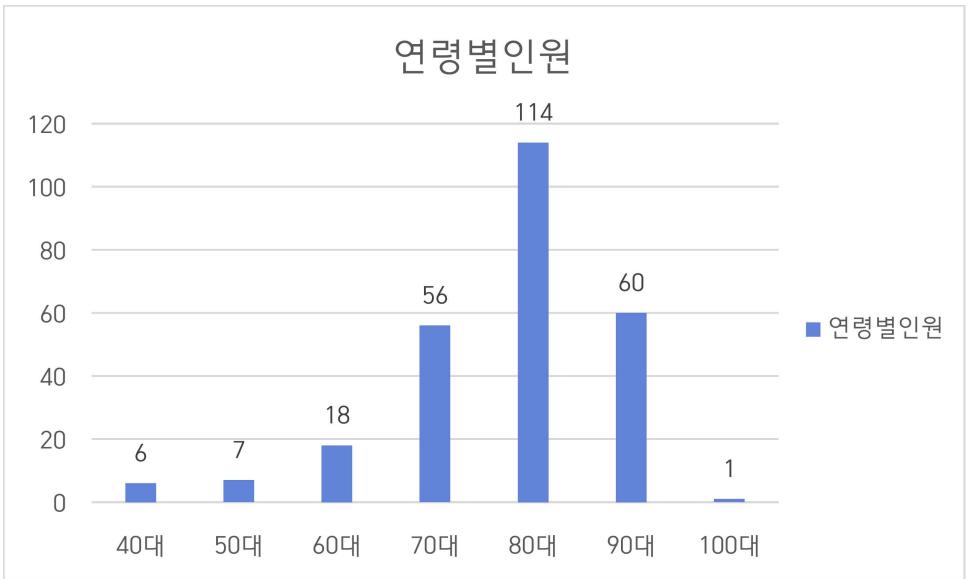
○ (처방) 구강섭취약, 연고, 좌약 등에 대한 처방
○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 (검사)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실시
○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환자의 필요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4) 사업수행 결과 (2022.1~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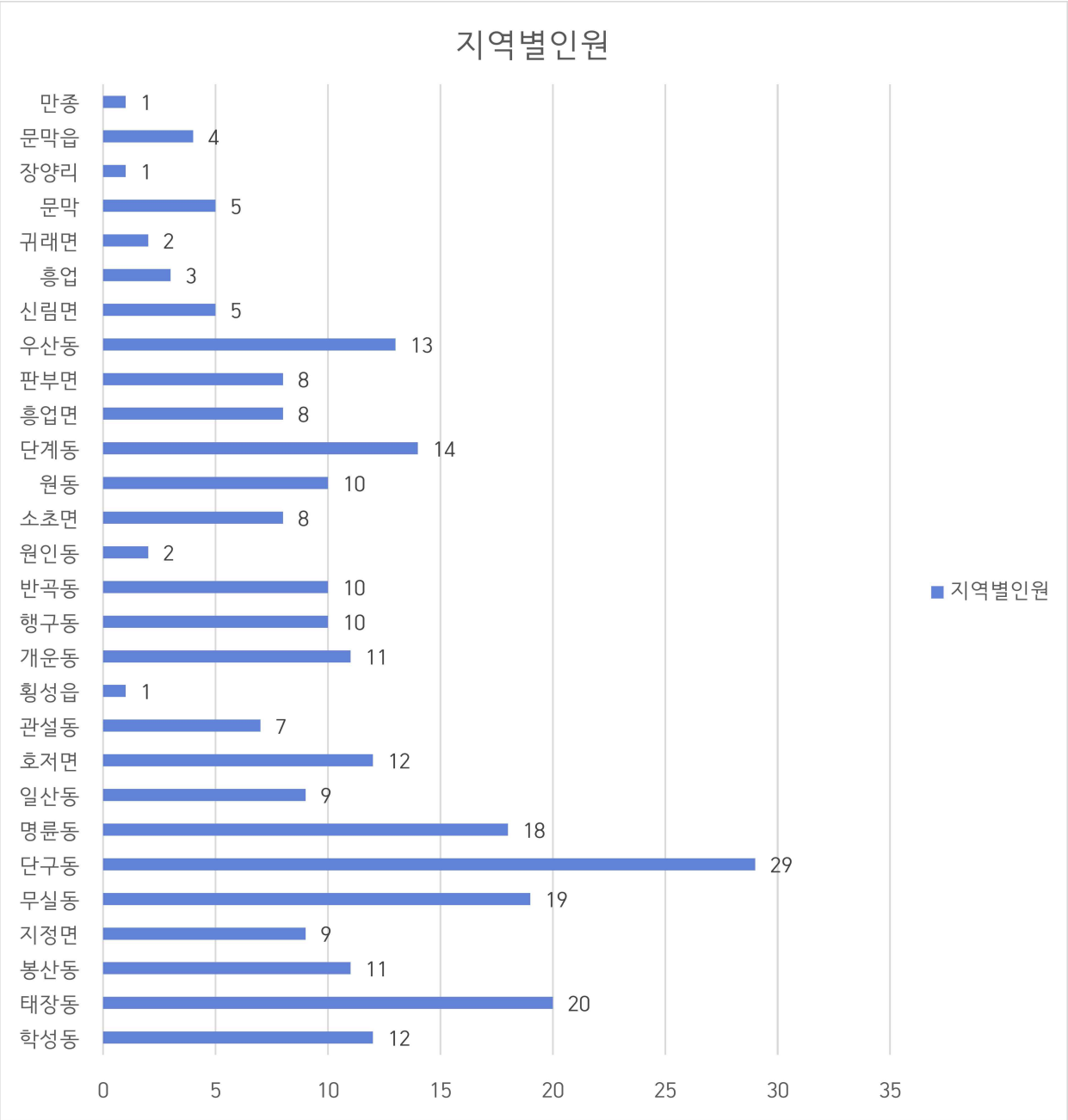
○ 참여자: 262 명
○ 방문 건수: 총 326건
○ 성별 비율: 남성 95명 (36%), 여성 167명 (64%)



○ 연령별 인원: **80대 > 90대 > 70대 > 60대**



○ 지역별 인원



- 원주권 내에서는 단구동이 2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지역사회 및 조합 연계

- 방문진료 의뢰경로: 지역 내 방문요양센터에서 79건(30%) 의뢰 됨.
- 원주시 복지관 : 4건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밥상공동체사회복지관)
- 조합원가입: 5건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건
- 다제약물 시범사업 :3건

2.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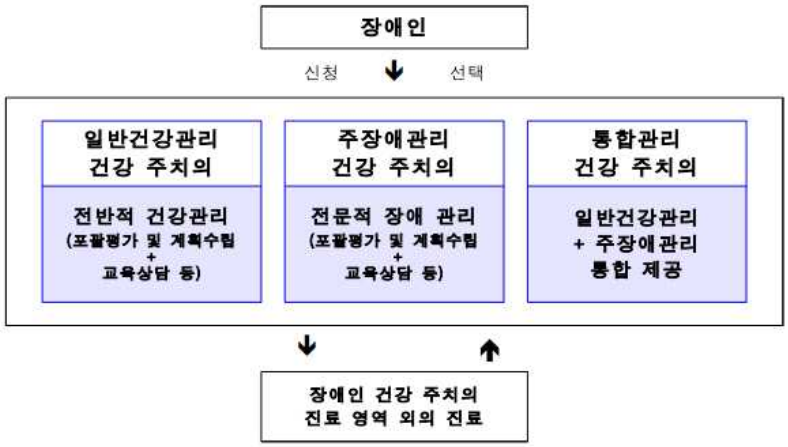
1) 사업안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모형**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운영모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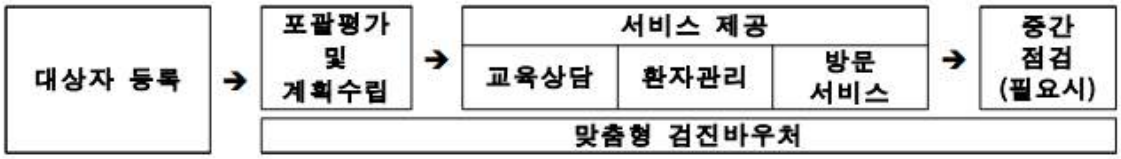


2) 주요사업내용

○ 2022년 (1년간) 등록 장애인 : **43명**

○ 서비스유형: 일반건강관리(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일반적관리)

○ 서비스 제공절차



3)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

(1) 사업수행내용

(2022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	1	1	4	3	-	3	9	4	6	5	5	42
교육상담	5	5	6	10	6	6	8	7	13	12	6	11	95
방문진료	3	5	4	2	3	1	4	3	2	7	2	9	45
방문간호	9	9	7	4	3	11	5	3	5	18	15	16	105

(2) 결과

①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2021.9~)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한계점과 개선사항이 느껴짐

* 수요자 측면

- 교육상담 대상이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되어 보호자 도움 없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상담에 한계
- 제공 서비스 중 방문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연 18회의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 중단 또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만족도 저하

* 공급자 측면

- 소요 노력 대비 낮은 수가로 인센티브의 부족

3. 사회백신프로젝트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 세부 내용

❍ 사업기간 : 1차년도 2021년 08월 01일 ~ 2023년 7월 31일 (총 12개월)
2차년도 2022년 09월 01일 ~ 2023년 8월 31일 (총 12개월)

❍ 사업내용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에 '공동 방문간호스테이션'을 구성하여 개원가의 의사가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리처방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의뢰하면, 방문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혈액검사, 문진,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방문간호를 의뢰한 개원가의 의사에게 대리처방 환자에게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더 큰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효과 도모

❍ 참여인력 : 의사 1인, 간호사 3인, 코디네이터 1인

❍ 참 여 자 :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진료를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는 환자를 기준으로 함.

- 6개월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대상자
- 대면 진료 및 기타 검사없이 대리처방만 받는 대상자
- 치매검사(mmse,gds) 1년마다 f/u필요 대상자
- 기초신체검사 및 혈액, 소변검사 진행가능
- 재가 장기요양기관 대상자 중 방문간호(건강체크 및 교육) 필요 대상자
- 자가 측정 결과

※ 사전 평가 도구를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이유 파악, 필요성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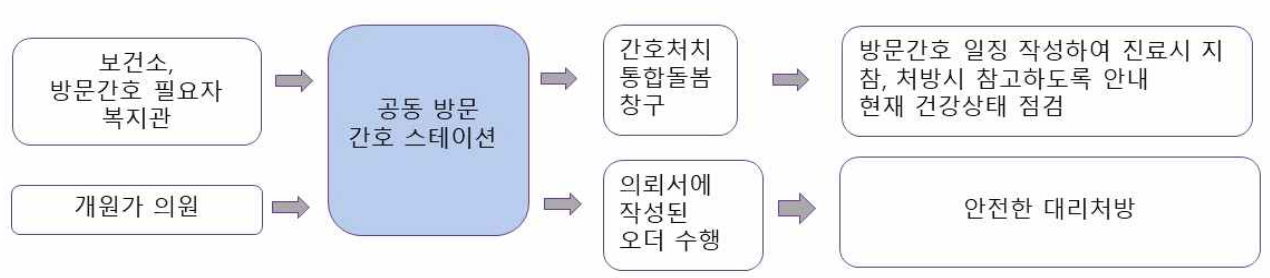
❍ 월 15회 이상의 방문간호 서비스(총 200회)

❍ 월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복지서비스 의뢰 및 사후관리
⇒ 원주시 4개 복지관과 연계(가톨릭, 명륜,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관)

❍ 보건 진료소, 원주시의료원 연계, 월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대리처방 환자 사례관리

❍ 사업 종료에 따른 방문호간호스테이션 운영 사례 공유회 개최 예정

나. 추진 방법



다. 참여 의료기관 :

밝음의원, 고려가정의원, 도담내과, 창문외과, 이재순 내과, 원의원,
비두리 보건 진료소, 사제리 보건 진료소, 송광선내과의원, 강원도원주의료원

라. 진행 일정

내용 \ 기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방문간호												
사례회의												
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 구축												
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 사례공유회												

마. 진행 내용

일 자	내용	비고
01월 28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회의	
03월 04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회의	
04월 14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회의	
06월 01일 ~ 30일	대상자,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 실행	
06월 03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회의	
07월 13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공유회	
07월 28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회의	
07월 31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1차년도 사업 종료	
09월 01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2차년도 사업 시작	
09월 22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회의	
10월 28일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례회의	

바. 이용 인원 및 현황

- 총 이용인원 : 40명
- 이용 현황(건)

	1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종료 7월	8월	2차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방문	28	15	5	11	16	38	30	-	2	12	25	18	200
검사	8	7	4	0	10	10	5	-	0	4	13	5	66

4.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사업보고

1) 사업개요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주무부서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사업인원: 총 13명 (19명 중 6명 종결)
- 사업대상: 31일 이상 장기입원하였다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욕구에 따른 돌봄 서비스 (5가지 서비스 중 의료지원 서비스 담당)

의료지원	요구도 평가, 맞춤형 케어플랜수립, 영양상담 및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돌봄지원	일상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제공
식사지원	복지관, 민간 식사제공기관을 활용하여 대상자 필요에 따라 1-3식 제공
이동지원	병원외래진료 및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
주거지원	주거지 수리등 기능 보강 및 비품구입등

- 지원 기간: 대상자 종결시까지

2) 사업진행 상황

- 22년 1월 : 22년 대상자 사례회의 및 23년도 사업관련 담당자 회의 진행
- 22년 3월~12월 : 월 대상자 사례회의 진행
- 22년 7월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간담회 진행

5. “농촌 및 시내경계 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사업보고

(NH투자증권 임직원 지정기탁사업)

1) 사업필요성

- 원주시 5개 지역의 건강반장활동가가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서로 돌보는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구축함. 건강반장활동가는 의료 및 복지 자원이 닿지 않는 의료 및 복지 취약 참여자를 발굴하고 낙상예방 환경 조성, 질병예방 활동, 건강소통체계 마련 등 긍정적 활동으로 전개됨.
-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시행되었던 방문의료서비스의 경험을 기반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토대를 마련하게 됨.
- 6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신체허약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상태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실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7차년도 사업해서 해당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 활동을 이어가고자 함.
- 방문건강관리의 대상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자기건강관리 역량 강화와 삶의 질 수준 제고를 구현하고자 예방적 차원의 방문건강관리 또는 방문운동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 격차 해소
-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건강반장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 구축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건강 효율성 증대 및 건강증진서비스 전개
-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적 입원을 예방함
- 원거리 노인요양돌봄서비스 전개

3) 주요 사업 내용

	7차년도 사업(2021.10.01.~2022.11.30)
사회적돌봄 서비스	○ 건강반장 집담회 월1회 진행 ○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전기요 지원 (참여자: 12명)

	○ 지역사회(가톨릭복지관) 연계: 죽세트 (참여자: 10명) -월 1회, 총12회, 건강반장 집담회 및 교육 시행 -지역사회 연계 5건 ○ 지역사회연계 5건
맞춤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36회 ○ 방문재활서비스 총 90회 제공 ○ 기초생계지원 37건 ○ 의약품 지원 58건

4)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

① 참여자 현황 : 총 33명

■연령별 현황(실인원)

90대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5	13	5	7	2	1

■지역별 현황(실인원)

판부면	지정면	소초면	문막읍	호저면	귀래면	흥업면	횡성군	신림면	그외지역
6	2	2	4	1	0	2	2	11	3

② 사회적돌봄서비스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건강반장 활동가	· 지역 내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치조직의 집담회 지원 · 신체, 사회적 취약성과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낮은 의료접근성에 처한 주민 발굴하여 의료서비스 및 자원 연계 등 주민 돌봄 구축 및 강화

③ 맞춤형서비스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방문간호	·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참여자 방문하여 기본간호 수행 (환경점검 및 기본건강 체크, 투약관리, 혈압, 혈당 등) · 36건의 방문간호 시행
방문재활	· 장애인 및 노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및 교육에 초점을 두어 잔존기능을 향상, 유지시키기 위함

	(일상생활활동 증진 및 교육, 인지향상 프로그램, 재활운동 지도, 주거환경 평가 및 수정, 가족 구성원 재활교육 및 재활 정보 제공 및 상담, 장애인 케어 교육) · 90건의 개별 방문재활 시행
기초 생계 지원	·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참여자의 기초생계지원 · 37건의 기초생계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전기요 및 난방비 지원, 주거환경 수정- 낙상 손잡이 및 위생시트 지원, 영양키트 지원, 반찬 및 당뇨식키트 지원)
의약품지원	· 의약품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 건강기능 유지 지원 · 58건의 의약품 지원

④ 원거리 노인 요양 돌봄 서비스

• 원거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의료취약에 노출된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 원주시 지정면, 판부면에 요양보호사 파견하여 건강 지원

6.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사업보고

○ 건강반장이란?

-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주민참여형 돌봄 모델로 지역, 마을 주민들의 건강 돌봄 및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연계하는 마을의 건강활동가

○ 돌봄대상 : 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취약가정 노인 등

○ 활동내용 : 말벗, 안부확인, 건강관리, 보건예방활동(정서지원, 놀이활동 등)
의료복지 취약대상자 발굴 및 연계

○ 참여인원 : 22명

○ 활동지역 및 명단

· 신림 2리(7명) : 최태인, 이명배, 조규봉, 이정옥, 윤정숙, 조영식, 김한기

· 황둔·송계(4명) : 이순례, 백낙진, 안봉녀, 최종은

· 봉산동(3명) : 임영희, 권순덕, 김기월

· 단구동(4명) : 김영신, 신숙자, 정인순, 조운자

· 명륜동(1명) : 홍성진

· 태장동(1명) : 황복자

· 문막읍(2명) : 김선동, 김양수

○ 건강반장 활동

일 자	장소	참석자	내용	비 고
1.20	조합 교육장	25명	건강반장 활동 오리엔테이션	
1.24	조합 교육장	7명	신규 건강반장 활동 교육 (활동프로그램, 혈압기 사용 등)	
2.23	조합 교육장	21명	구강관리, 올바른 칫솔고르기 신규 건강반장 인사 및 소개 건강반장 이해 및 활동내용 교육	
3.24	조합 교육장	22명	3월 활동내용 공유 장염의 이해(종류와 원인, 증상, 예방법 등) 노인 건강안전관리 (식품위생) 활동일지 작성 및 질의 응답	

4.21	조합 교육장	22명	4월 활동내용 공유 건강박수, 건강한 생활환경(낙상예방) 활동관련 안내사항 전달	
5.26	조합 교육장	19명	5월 활동내용 공유 안전한 약물관리 (약물보관방법, 복용방법, 보관기간 등) 활동 관련 안내사항	
6.24	조합 교육장	19명	6월 활동내용 공유 건강박수, 이슈가 된 전염병 (원숭이 두창, 여름철 수족구) 활동 관련 안내사항	
7.21	조합 교육장	19명	7월 활동내용 공유 여름철 건강관리(식중독) 건강박수 활동 관련 안내사항	
8.25	조합 교육장	20명	8월 활동내용 공유 건강박수, 가을철 건강관리 (면역력 높이기, 진드기 감염병 예방) 활동 관련 안내사항	
9.21	조합 교육장	20명	9월 활동내용 공유 구강관리, 올바른 칫솔질, 틀니관리법 활동 관련 안내사항	
11.23	조합 교육장	21명	11월 활동내용 공유 건강박수 활동 관련 안내사항	
12.16	조합 교육장	21명	12월 활동내용 공유 낙상예방 (안전한 환경 구성하기,지켜야할 생활습관) 건강박수 활동 관련 안내사항	

2022년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사업보고

1. 사업현황

1) 직원현황: 총 31명(대표자1명,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2명, 간호사3명, 요양보호사25명)

이름	담당업무	직위	자격
이광희	■법인 대표 ■사업계획, 운영관리	이사장	업무 총괄
신옥경	사업지도 및 감독	시설장	간호사(겸임)
김지영	■교육 및 상담 ■가산업무 ■서비스 계약 및 관리 ■자원연계 ■요양직원업무관리	직원	사회복지사 2급
윤이선	■행정, 회계	직원	전산회계 1급(겸임)
안의현	방문 간호	직원	간호사(겸임)
염은경	방문 간호	직원	간호사(겸임)
최유진	방문 간호	직원	간호사(겸임)

- 1월 김윤정 사회복지사 휴직
- 3월 안의현 간호사 휴직, 최유진 간호사 입사

2) 요양보호사 25명 근무현황 (*1명 겸임)

이 름	담당업무	직위	자격
이재완, **신명자**, 심혜자, 이복구, 최상옥, 홍용미, 박정자, 정명순, 계지영, 이은희(10명)	가족요양	요양직원	요양보호사 1급
김경옥, 김연화, 이상순, 신명자(가족겸임), 정현숙, 이선기, 차명선, 신순덕, 하미숙, 김선분, 김덕연, 김정옥, 김영숙, 박원자, 황계순, 이선미(16명)	방문요양		

3)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현황

서비스구분(월)		방문요양(명)	방문간호(명)	방문목욕(명)
월별 이용 인원수 (연인원/명)	1	16	8	1
	2	17	7	1
	3	20	9	1
	4	21	8	1
	5	21	9	1

	6	21	7	1
	7	19	7	1
	8	19	6	1
	9	17	5	1
	10	14	4	1
	11	15	4	1
	12	15	0	1
월평균인원		17명	6명	1명

4)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실 인원(요양+간호+목욕)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비스 대상자 인원(명)	22	23	24	24	25	25	22	23	20	17	18	15

5) 대상자 이용현황 ※강조체는 서비스 종류 2개 이상 중복대상자

- 파트요양(21명) : 고0만(기초), 곽0수(기초), 김0옥, 김0식, 김0배, 김0정(기초), **나0찬**, 류0열, 신0재(기초), 윤0성, 이강원, 이0추, **전0호**, 정0숙, 정0용(기초), **조0호**, 차0기(기초), 최0녀, 최0순, 한0수, **함0길**(기초)
- 가족요양(11명) : 강0희, 김0일 김0자, 김0복, 김0식(기초), 김0중, 어0, **엄0열**, **이0,** 이0호, 한0석
- 방문간호(12명) : 기0진, 김0환, **나0찬**, 서0간, 이0상, **이0**, **전0호**, 전0수, **정0용**, 조0도, **조0호**, **함0길**
- 방문목욕(1명) : **엄0열**

6) 방문요양 및 간호서비스 신규계약 및 종결현황

구 분	신규계약	해지(시설입소포함)	사 망
방문요양	최○녀, 김○복, 김○옥, 정○용, 이○, 강○희, 윤○성, 한○석, 이○원, 한○석, 김○정, 김○자, 김○식	차○기, 어○, 신○재, 정○숙, 김○일, 윤○성, 김○옥, 강○희, 곽○수	이○, 김○복, 나○찬, 정○용
방문간호	서○간, 김○환, 조○도, 정○용, 이○, 함○길	서○간, 이○상, 함○길, 조○도, 전○수	기○진, 이○

2. 사업내용

1) 상담

- 대상자 가정 정기방문 및 서비스 상담 258건, 직원고충상담 3건

2) 교육 및 회의

- 01.20 노인인권 온라인집합교육 1회 참석 6명/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비대면)
- 03.11 요양직원 치매전문교육 1회 2명(김경옥,원영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온라인)
- 06.08 방문요양, 간호 반기별 사례회의 실시
- 06.11 요양직원 직무교육 1회/ 위탁연계교육 (패밀리요양센터 연계)
- 06.13 온라인치매전문교육 교육 1명(차명선)/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 07.13 온라인치매전문교육 교육 1명(계지영)/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 08.10 희망이음 zoom활용 교육(김지영)
- 09.07 평가설명회 참석(김지영)
- 09.2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명(김지영)/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 11.08 방문요양, 간호 반기별 사례회의 실시
- 12.20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참석
- 12.26 희망이음(장기요양) 연도전환 온라인교육 참석
- 2022년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이수(전 직원)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길동무 전체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해당 법정의무교육 포함)

3) 자원연계

- 조합 이창호 조합원(기저귀지원): 김0식
- 신협사회공헌재단(연탄지원): 김0식
- 원주밝음신협(전기요, 이불지원): 김0배, 함0길
-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김치지원): 김0식, 한0수, 함0길
- 원주의료사협 길동무(물티슈지원): 전0호

4) 서비스연계

- 장애인주치의사업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연계(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분)
- 강원통합돌봄사업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연계

5) 사례관리

- 매월 월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상태변화보고 및 조치
- 대상자 및 보호자 전화상담 김0배 외 2명, 총 3건
- 장기요양보험 이용 및 등급인정 문의자(길동무 서비스 계약X)
- 등급신청 도움 및 상담 15명

6) 운영회의 및 기타

- 법인 이사회 대체 운영
- 법인 내 직원회의 등 공유

제3호 의안 :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조직통합 비전 결의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결 주문 사항

1. 통합 주체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강원권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3곳(춘천, 원주, 충주)

2. 통합 방법 및 절차
- 원주의료사협의 정관 변경 및 신규 임원 선출(아이쿱생협 임원)
- 아이쿱생협 3곳의 조합원 이관 작업(23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3. 통합 목적
- 새로운 공동 유대 형성(상호부조 사업 및 라이프케어 공제 사업 준비)
- 강원권 건강검진센터 개소

4. 통합 효과
- 원주를 넘어 강원도 전체와 충주 등 사업권 확대
- 자산 증대(조합원, 출자금 등)
- 자본 조성 확대(책임출자금 제도, 조합비 제도)
- 새로운 조합원 조직 활동 강화(건강관리 및 먹을거리 등)
- 자연드림 친환경매장 이용

5. 비전 결의 후 과제
- 새로운 공동유대 형성에 따른 조합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도모
- 임직원의 통합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시스템 효율화 추진
- 협동조합 간 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실천 선행

제4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규정

제1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하고, 임원정수 이내에 대하여 연기명 기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이사장, 부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이사 및 감사 선거에 대한 정관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 **의결 주문 사항**

1. 이사 후보(가나다순) - 총 9명.
① 김유미(조합원 번호 50209)
② 김소민(조합원 번호 220004)
③ 김은주(조합원 번호 230025)
④ 강숙임(조합원 번호 230030)
⑤ 도수연(조합원 번호 230010)
⑥ 안승혜(조합원 번호 230031)
⑦ 양종천(조합원 번호 230033)
⑧ 장태선(조합원 번호 230004)
⑨ 차윤정(조합원 번호 100246)

제5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안건 제안 배경

- **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위한 명칭 변경**
- **대의원 자격 완화 및 임기 변경을 통한 조합의 활동성 강화**
- **건강 예방 및 건강 개선을 위한 상호부조사업 추진**
- **정관 개정에 따른 규약 개정**
-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필요**

■ 의결 주문 사항

- 정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위한 명칭 변경
제2조(목적)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제25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의원의 자격은 조합원 중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인 조합원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의원의 자격은 조합원 중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인 조합원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의원 자격 완화 및 임기 변경을 통한 조합의 활동성 강화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제5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제58조(사업의 이용) 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58조(사업의 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7조(사업의 종류) <중략>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57조(사업의 종류)** <중략> 5.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추가>	건강 예방 및 건강 개선을 위한 상호부조사업 추진
제57조2(상호부조) <신 설>	**제57조2(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재원으로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직접 신청서와 참가전 알릴의무, 상호부조 규정 동의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상호부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호부조사업 추진에 따른 개정

	③ 상호부조에 참가한 조합원은 제6항의 상호부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부조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상호부조회비는 조합원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며, 최소 100,000원에서 최대 400,000원까지로 한다. ④ 상호부조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조합원에게 배당금 등의 수익배분을 약속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며, 상호부조와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 ⑤ 상호부조금은 제1항의 각 지급사유별로 정하되 그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한다. ⑥ 상호부조 참가자격, 상호부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상호부조회비의 액수와 환급사유 및 그밖에 상호부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상호부조 규정의 제·개정,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운영계획의 수립, 결산 등 그밖에 상호부조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상호부조운영위원회를 둔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7조에 따른 주사업 및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중략>	**제58조(사업의 이용)** <중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추가>	상호부조사업 추진에 따른 개정

제63조(운영의 공개) <중략>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제63조(운영의 공개) <중략> 8. 상호부조 사업현황<추가>	상호부조사업 추진에 따른 개정

- 규약

■ 과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3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3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경비, 서비스 이용대금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 수정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출자금, 경비, 서비스 이용대금 또는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및 문구 삭제

■ 출자금 운영 규약(출자좌수 감소 규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출자좌수 감소 규약	출자금 운영 규약	규약 명칭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7조 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 제1항, 제67조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금 증자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8조 출자 내용 연동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금 증자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문구 추가
제3조【출자금의 유형】 신설	제3조【출자금의 유형】 출자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출자금 :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해 최초 가입 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출자금으로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2. 증자출자금 : 조합과 연합회가 제공하는 사업 또는 조합과 연합회가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협력단체')가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 납부하는 출자금이다.	
제4조【책임출자금】 신설	제4조【책임출자금】 ① 책임출자금이란 조합과 인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이 책임지는 출자금 규모를 뜻한다. ②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총 자본금을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100만원(1구좌 1만원 기준 100구좌)으로 한다.	

제5조【출자금의 감경 및 면제】 신설	제5조【출자금의 감경 및 면제】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제3조 제1호 가입출자금과 제2호 증자출자금의 감경 및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출자금 반환】 신설	제6조 【출자금 반환】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년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년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년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 통지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7조【출자금의 감소】 ①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좌수)이 책임출자금 이상일 경우 책임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출자감소를 위한 출자금 환급은 신청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출자금 환급에 대한 검토와 승인은 총회에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 통지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문구 수정 및 삭제
제5조【출자자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자수가 기본자수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제9조【출자금의 감소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금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한 책임출자금 미만인 경우 2.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문구 수정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금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속 변경시 정보 및 출자금 이관】 신설	제10조【소속 변경시 정보 및 출자금 이관】 조합원이 이사, 전출, 거소,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소속을 인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속한 다른 회원조합으로 소속을 변경해 사업을 이용할 경우, 조합원 동의하에 변경 후 소속 조합으로 누적출자금을 이전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변경 전 소속 조합에서 출자금을 환급받고 변경 후 소속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타 출자자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자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문구 수정

제6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내가 살던 곳에서 의료+복지+요양+돌봄을 통한 인간적 돌봄 실현』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3년 사업계획(안)

사회적기업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Wonju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I. 설립목적 및 활동

1. 설립목적

○ 조합원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돌봄 활동
○ 국가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지사회 구현
○ 생명사상에 기반한 자립적인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2. 조합의 사명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보건·복지·건강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조합원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지역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3. 주요활동

1)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2) 조합원 및 지역주민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
3)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
4)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
5)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협동조합인을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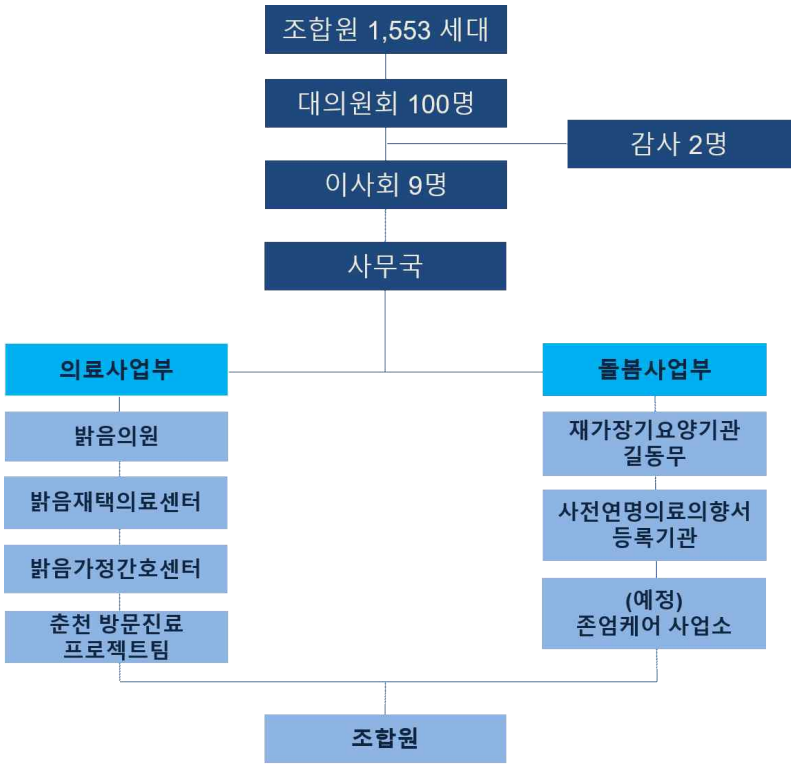
4. 20주년 슬로건

1) 인간과 노동 그리고 존엄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2) 조합원의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책임지는 조합 실현
3) 의원급 주치의제와 함께 병원급 주치의제 구현
4) 의료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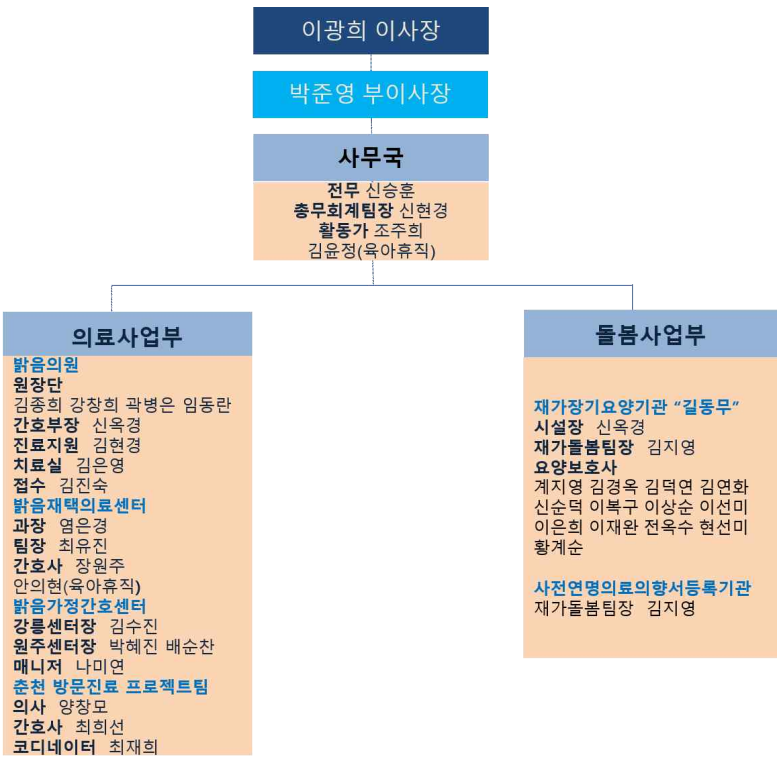
Ⅱ. 기본 현황

1. 조직도 및 직원현황

○조직도



○직원현황



2. 분장사무

구 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이사장		이광희	- 조합 운영 총괄	
부이사장		박준영	- 조합 운영 지원 및 대외 협력 업무 총괄	
사무국	전무	신승훈	- 조합 실무 총괄 - 이사회 운영 - 원장단 운영 - 대외협력업무 - 기획사업 및 프로젝트	
	총무회계 팀장	신현경	- 법인세무관리(법인세, 소득세) - 직원 입퇴사 관리 - 직원급여,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 출자금관리 - 결산(이사회 자료작성, 길동무매출내역) - 연차관리	
	활동가	조주희	- 조합원 관리 - 조합활동 및 소모임 등 운영 - 직원상조회 운영 -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운영 - 법정의무교육	
		김윤정	- 육아휴직	
밝음의원	의사	강창희	- 재활의학과	외래, 촉탁의
		김종희	- 가정의학과	외래, 방문진료, 촉탁의
		곽병은	- 마취통증의학과	*방문진료 전담
		임동란	- 영상의학과	*방문진료 전담
	간호부	신옥경 부장	- 간호파트 총괄	
		김현경	- 진료비 청구 -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 등	
		김은영	- 치료실 운영(주사, 영양제(수액) 등)	
		김진숙	- 접수 및 사무 업무	

	밝음가정 간호센터	김수진 센터장	- 강릉 가정간호 담당	
		박혜진 센터장	- 원주 가정간호 담당	
		배순찬 센터장	- 원주, 횡성 가정간호 담당	
		나미연 매니저	- 가정간호센터 행정 전담 - 촉탁 요양시설 관리	
	밝음 재택의료 센터	김종희 센터장	- 재택의료센터 운영 총괄	겸직
		염은경 과장	- 재택의료센터 실무 총괄 -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최유진 팀장	-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 NH 기탁사업(농촌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 - 재택의료서비스(방문진료, 방문간호)	
		장원주 간호사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담 - 재택의료서비스(방문진료, 방문간호)	
		안의현	- 육아휴직	
재가장기 요양기관 “길동무”	사회 복지사	김지영 재가 돌봄 팀장	-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등급인정기간 및 서비스 제공관리 - 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 관리 - 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 월례회의 운영 - 법정의무교육 운영	사전연명의료기관 담당자
	요양 보호사	계지영 김경옥 김덕연 김연화 신순덕 이복구 이상순 이선미 이은희 이재완 전옥수 현선미 황계순	- 일선 요양서비스 제공 - 대상자 및 보호자, 사무실과 수시 소통 -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식사 및 이동도움 등) - 인지활동 및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Ⅱ. 사업계획

1. 2023년 중점방향

○ 의료협동조합 21주년을 맞아 새로운 가치 기반의 조합 가치 확립

○ 식품과 의료, 상호부조를 연결하는 새로운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추진

○ 의료기관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조합원 만족도 향상

○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방문진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이용 보편화

○ 자기 돌봄, 이웃 돌봄 실천을 위한 건강반장 육성 및 건강마을공동체 확산 도모

○ 상호부조,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등 학습을 통한 협동조합 활동가 양성

○ 조합 활동 홍보, 지역사회 나눔, 캠페인, 자원봉사 등 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실천

○ 예방 중심 활동을 위한 조사 연구

2. 주요사업계획(안)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비고
일차의료기관 “밝음의원”	①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②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③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관리 사업	
	④ 예방접종사업(대상포진, 폐렴 ,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밝음가정간호센터	① 가정간호센터(원주센터, 강릉센터)	
밝음재택의료센터	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① 신규 대상자 확대	
	② 서비스 질 향상 및 모니터링 강화	
	③ 요양보호사 교육 및 소통 확대	
의료복지 사각지대 돌봄	① 농촌, 시내 경계 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②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③ 빈곤층 건강 지원 협력(원주시의사회 빈의자)	
조합 운영 및 관리	①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② 대의원“소통의 날”	
	③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④ 임직원 워크샵	
조합 활성화	①“주민이 주민을 돌보는”건강반장	
	② 신규 조합원 환영회	
	③ 원주건강수다회“돌봄의 모든 것”	
	④“고립된 이웃”건강의료지원 목적기금	
	⑤ 건강소모임	
	⑥ 원주의료사협 자원봉사단	
	⑦ 상호부조 사업	
지역사회 연계 협력	① 존엄케어 사업소 설립 추진	
	②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③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④ (예정)우산동도시재생사업	

3. 세부내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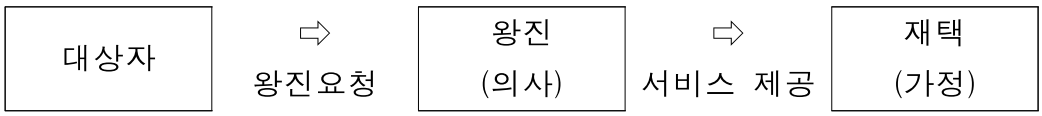
■ 일차의료기관 “밝음의원”

①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사업목적 : 거동불편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 사업내용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왕진 의료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내용 :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교육상담 등

○ 대상자

-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예시) 마비(하지. 사지마비, 편마비 등), 수술직후, 말기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기타 거동 불편 등

○ 2023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왕진료 I 기준	일반보험(100/30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26,900	88,830	38,070
	보호2종(100/10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26,900	114,210	12,690
	보호1종(100/5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26,900	120,555	6,345
신설 수가 (의사와 간호사 동반 방문시)	일반보험(100/30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59,190	111,440	47,800
	보호2종(100/10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59,190	143,280	15,910
	보호1종(100/5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59,190	151,240	7,950

②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상담, 방문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증진

○ 사업내용

- 장애인-주치의 상호 등록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
- 장애, 일상적 건강문제, 질병 예방, 만성질환 등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 방문의료, 전화상담 등을 통한 거동 불편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대상자는 중복 참여 불가.

○ 2023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항목별 수가

구 분	수 가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61,940
나. 중간점검료	34,840
다. 교육 상담료 I	
(1)10분 이상 20분 미만	14,380
라. 환자관리료	10,310
마. 방문료	
(1)방문진료 I	126,900
(2)방문진료 II	88,280
(3)방문간호	78,530

③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관리 사업

○ 사업목적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질병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삶 유지

○ 사업내용

- (건강검진)신체 검사
- (건강검진)체성분 검사
- (건강검진)암,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당뇨병, 결핵 등 검사
-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 상담, 검사 등

○ 대상자

- 건강검진 대상자
- 고혈압·당뇨 질환자

○ 만성질환관리 등록자 현황(22년 말 기준)

- 417명(고혈압 211명, 당뇨 206명)

④ 예방접종사업

○ 사업목적

- 개인에서의 감염병 발생 자체를 방지 또는 중증 감염병으로의 진행을 줄여 입원 및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개인, 가족의 부담 최소화

○ 사업내용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대상포진, 폐렴 예방접종

○ 대상자
- 청소년 및 성인 등

○ 추진계획
- 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정기적 안내(원내 홍보, 문자 발송 등) : 시기 도래시
-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공문 발송, 유선 안내 등) : 시기 도래시

○ 참고(성인용 예방접종 일정)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성인용) 자세히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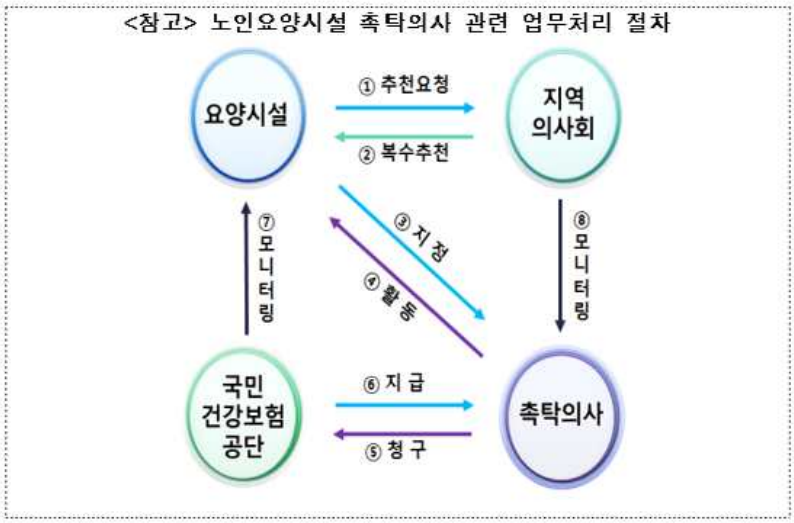
대상감염병	19~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처음 1회 Tdap, 이후 10년마다 Td 1회		처음 1회 Tdap, 이후 10년마다 Td 1회 (Tdap은 65세 이하에서만 접종)		
인플루엔자	매년 1회			매년 1회	
A형간염	2회 (0, 6개월)	항체 검사 후 접종 (0, 6개월)		항체 검사 후 접종 (0, 6개월)	
B형간염	항체 검사 후 접종			항체 검사 후 접종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위험군 대상 최소 1회 접종				
수두	위험군 대상 항체 검사 후 2회 접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여성 대상 접종				
수막구균	위험군 대상 1회 또는 2회 접종				
폐렴구균	위험군 대상 1회 접종				1회
대상포진				1회	1회

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 사업목적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질 향상 및 안정화 도모

○ 사업내용
- 진찰, 처방
- 건강관리

○ 추진체계



○ 촉탁의 현황

- 김종희 원장 : 보훈요양원, 로얄요양원
- 강창희 원장 : 산고대요양원, 천사요양원
- 곽병은 원장 : 영월요양원

○ 대상자수 : 245명(천사 50, 산고대 25, 보훈 50, 로얄 70, 영월 50)

○ 추진계획

- 입소자별 환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상시

■ 밝음가정간호센터

① 가정간호센터 운영(원주센터, 강릉센터)

○ 사업목적

- 의료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증대상자, 만성노인성 질환)에 대해 재가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 급증하는 노인층의 건강실태와 장기요양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성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호스피스 환자, 기타 거동불편자 등
- 진료내용 : 비위관 교환, 정체도뇨관 교환,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욕창치료, 단순상처치료, 염증성처치, 봉합선 제거, 방관 및 요도 세척, 수액 등

○ 가정간호 비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로 구성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20%), 희귀/중증·난치질환자(10%), 암환자(5%)

○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현황

- 원주센터(22개소,재가 9명)

· 우리믿음요양센터, 소망요양원, 흥업요양원, 행복요양원, 평심원노인요양원, 믿음요양원, 소담 요양원, 가온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휴요양원, 성문노인전문요양원, 보훈요양원, 산고대노인요양센터, 천사요양원, 행복마을요양원, 모아요양원, 우리요양원,로얄요양원, 매화실버요양원, 골든포레스트요양원, 영월군노인요양원, 원주사랑마루요양원

- 강릉센터(25개소)

· 참좋은마을요양원, 에이플러스 홈 노인의료복지시설, 다금요양원, 강릉부모사랑, 강릉부모사랑2, 다솜요양원, 우리요양원, 이든요양원, 마루요양원, 강릉 사랑의 뜰안 요양원, 가정강릉요양원, 가애노인요양시설, 은영노인요양시설, 임영요양원, 효담요양원, 강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덕실리 요양원, 사천요양원, 갈바리 노인 요양원, 정한요양원, 소돌요양원, 주문진요양원, 강동요양원, 행복마을요양원, 우리시니어스요양시설

○ 기대효과

- 건강으로 고립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재택의료센터

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사업목적

- 만성복합질환과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해당 노인의 건강관리와 돌봄연계가 적정하게 제공되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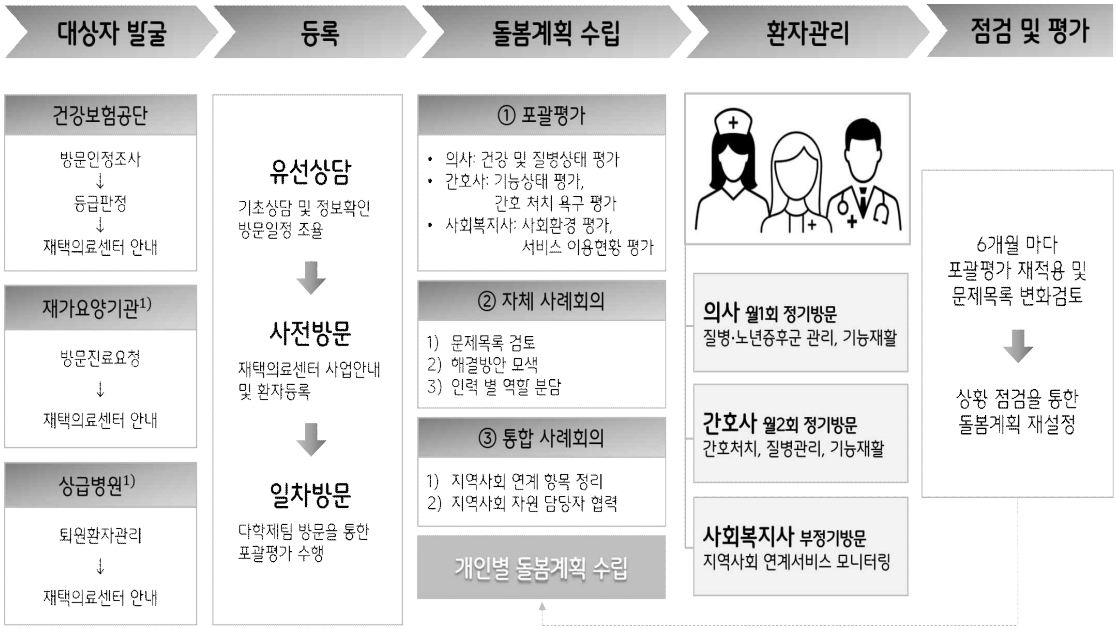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대상자의 전반적 상태와 욕구에 대하여 포괄적 평가 결과에 따른 케어플랜 수립,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 사회복지사는 비정기적 수시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발굴 및 서비스 연계

○ 대상자

- 장기요양 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 및 의료팀이 판단한 사람

○ 서비스 업무 흐름도



○ 산정지침

- 방문진료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따름

왕진료 I 기준	일반보험(100/30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26,900	88,830	38,070
	보호2종(100/10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26,900	114,210	12,690
	보호1종(100/5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26,900	120,555	6,345
신설 수가 (의사와 간호사 동반 방문시)	일반보험(100/30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59,190	111,440	47,800
	보호2종(100/10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59,190	143,280	15,910
	보호1종(100/5부담)	전액	청구액	본인부담금
		159,190	151,240	7,950

- 재택의료 급여 비용 기준 및 금액

분류	기준	금액(원)
재택의료기본료	수급자 1인당 월 1회	**140,000**
지속 관리료	수급자 1인당 6개월 단위	**60,000**
추가 간호료	방문당 (월 3회 한정)	**47,450**

■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① 신규 대상자 확대

○ 목적 : 요양서비스 신규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업 매출 증대

○ 재가장기요양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1~5)을 받은 어르신

○ 장기요양 대상자 현황(22년 말 기준)

- 서비스대상자 15명, 요양보호사 11명

○ 23년 대상자 목표 : 방문요양 25명(파트20명, 가족5명)

○ 추진계획

- 조합원 대상 길동무 홍보
-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홍보
-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소속 단체 홍보 메일 발송
- 홍보매체 및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지면, SNS, 블로그 등) 등

② 서비스 질 향상 및 모니터링 강화

○ 목적

- 모니터링 강화 실시, 월 1회 월례회의 실시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월 1회, 최소 20분 이상의 관리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 수시 전화 모니터링 실시
- 월례회의를 통한 case 서비스 내용 공유 및 요양보호사들의 know-how 공유
- 4, 5등급 어르신 방문가산 시 인지활동 교구 및 출력물 활용

③ 요양보호사 교육 및 소통 확대

○ 목적 : 직무교육과 법정의무교육 외 역량강화을 위한 워크숍, 공동체 교육 등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

○ 대상자 : 담당자 및 길동무 소속 “요양보호사”

○ 추진계획

- 패밀리요양보호사교육센터를 통한 직무교육
- 자체 법정의무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힐링나들이
- 밝음의원을 통한 응급상황대응 및 심폐소생술, 욕창예방 및 관리 교육

○ 소요예산 : 1,000천원

[참 고] 2023년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운영안

1. 사업운영 방안

1)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추가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일반은 15%, 감경대상자 9%(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감경60%), 6%(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감경40%, 기초생활수급자 0%]

->수 가: 작년대비 평균 4.7% 인상(방문요양-4.92%, 방문간호-4.23%, 방문목욕-4.55%)

->인건비: 파트 :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12,000원(연차수당 별도)/ 가족요양 : 90분 27,600원,
가족요양 60분 18,400원/ 목욕 60분 이상 : 15,500원
자체 중증수급자 수당(1등급), 명절수당
대상자 당 교통비 50,000원, 태그100%수당 20,000원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금(원)
월한도액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①일반대상자15% ②감경대상자9, 6% ③기초생활수급자 0%
월한도액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증가액)	212,300	203,200	66,400	61,300	52,600	27,000	

-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음.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4.92% 인상】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22)	120분 이상	38,390	210분 이상	56,170
	16,190(‘23)		40,280		58,930
60분 이상	22,380	150분 이상	44,770	240분 이상	61,950
	23,480		46,970		65,000
90분 이상	30,370	180분 이상	48,170		
	31,650		52,880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4.23% 인상】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7,840('22)
	39,440('23)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49,460
60분 이상	57,090
	59,500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4.55% 인상】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평일 22시 이후 06시 이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제외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급여비용의 50% 가산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운영기준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중 인건비 지급권장수준을 지켜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이란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과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 인건비지급권장수준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86.6%(86.6%, 2022년),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50.1%(49.8%, 2022년), 방문간호(조무)사 60.9%(60.4%, 2022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자료는 매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3) 대상자 관리

- 장기요양1~5등급 대상자와의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전담관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 전담관리자는 대상자를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심신건강상태를 확인하며, 공인된 척도(낙상, 욕창, ADL, 인지선별검사)를 활용한 사정평가 및 욕구변화를 파악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에 반영한다.
- 대상자변화에 대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에 기준에 적합하게 기록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한다.
-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지자체 승인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매년 새해 수가변동에 따른 갱신 要)
- 대상자는 방문요양 25명, 방문목욕 포함 최소 25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
- 요양보호사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회차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수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법정의무교육, 요양보호사 근무지침과 직업윤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교육, CS(Customer Service) 교육 등을 실시한다.
- 매월 1회 월례회의를 진행하여 요양직원과 업무를 공유하도록 한다.
- 대상자상태와 문제에 관한 심신상태기록지를 주1회 제출하도록 관리한다.
-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직원교육을 진행한다.
- 기관은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기관은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을 상시 게시 및 비치하고,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 기관은 요양직원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2. 사업수행 인력 및 담당업무

NO	직위	성명	직급	성별	연령	자격면허증	담당업무	비고
1	대표자, 이사장	이광희	이사장	남	47	사회복지사 1급	사업총괄, 홍보, 인사관리, 예산관리, 서비스 총괄관리	겸임
2	시설장	신옥경	관리책임자	여	53	간호사	사업지도 및 감독	겸임
3	직원	김지영	재가돌봄팀장	여	31	사회복지사 2급	사업계획, 교육, 실적 및 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가산방문, 직원고충상담	전임
4	직원	신현경	회계팀장	여	52		행정, 사무, 회계 담당	겸임
5	직원	안의현	방문간호사	여	34	간호사	방문간호 담당	겸임
6	직원	염은경	방문간호사	여	43	간호사	방문간호 담당	겸임
소 계		총 6명						

3. 주요일정

1월 이사장 새해 길동무 어르신 댁 방문인사 대신 구정 선물 배부
노인인권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 참여안내

2월 2023년도 길동무 사업 및 교육계획
(신규, 법정의무, 치매전문, 직무, 운영규정, 노인인권 등)

3월 조합 제9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4월 상반기 방문요양, 방문간호 사례회의 실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5월 법정의무교육 실시, 상반기 서비스만족도조사 실시

6월 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욕창예방 및 관리 교육

7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8월 직원여름휴가 예정

9월 노인인권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 참여안내, 직원 건강검진 실시 안내

10월 사례관리 및 상담관리 내역 정리, 상반기 방문요양, 방문간호 사례회의 실시

11월 하반기 서비스만족도조사 실시

12월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자체평가 실시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법정의무교육, 어르신 돌봄 사례 공유 등 포함)

4. 기관운영

1) 인사관리 및 교육

- 신규직원교육, 치매전문교육,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2) 업무관리 및 회의

- 이사회보고, 요양직원 월별대상자 상태보고 및 조치관련 사례회의
- 서비스모니터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방안 논의

3) 요양직원관리

- 직무상담, 고충상담, 관련교육 실시
- 신규대상자 발굴 및 연계 시 독려
- 신규 요양보호사 발굴(인력Pool 구축)
- 기존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4) 대상자관리 및 신규대상자 발굴

- 월1회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및 급여제공 상황 확인, 기관장 및 관계자 방문상담, 복지자원 및 의료서비스(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사업의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정간호 등) 연계
- 신규대상자 발굴(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밝음의원 내원자 대면홍보, 인적네트워크 구전홍보,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회원단체 공문발송, 방문진료로 의사소견서 발급 시 대면 홍보 등), 조합원 및 지역 잠재 대상자 발굴

5)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조합자원
 (NH투자증권 임직원 지정기탁사업-농촌사업, 한국타이어나눔재단-씨앗기금)
- 장애인주치의사업,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의료사업 연계
- 지역자원연계
 (원주의료원 공공의료복지지원팀, 밝음신협 사회공헌사업,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연계)
- 기타 후원 및 협약단체 서비스 연계

6) 서비스관리

-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실시(연 2회 상, 하반기)
- 수급자 및 보호자 서비스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상,하반기)
- 요양보호사 직무 워크숍 실시(연 1회)
- 노인인권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참석 지도(연 1회)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참석 지원(연 1회)

7) 사례관리

- 월별상태 및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관리
- 반기별 방문요양 사례회의 실시

■ 의료복지 사각지대 돌봄

① 농촌 및 시내 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 사업(NH투자증권 기탁)

○ 사업목적

-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자기건강관리 강화
- 지역 내 건강반장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강화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건강 효율성 증대 및 건강증진서비스 전개
- 지역사회 건강증진교육을 통한 질병예방과 관리

○ 사업내용

1)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내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치조직의 집담회 지원
- 신체, 사회적 취약성과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낮은 의료접근성에 처한 주민 발굴하여 의료서비스 및 자원 연계 등 주민 돌봄 구축 및 강화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대상자
- 주요활동

· 연 1회 건강반장양성교육 수료

· 월 1회 집담회 (보수교육 및 활동 나눔 및 자원연계)

·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주민 건강 안부 묻기

2) 맞춤형서비스

- 농촌 및 시내 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신규 참여자 30명 발굴
- 건강 상황에 따른 맞춤형 방문간호 및 방문재활 서비스로 건강 효율성 증대
- 의료사각지대 참여자의 기초생계지원
- 참여자 사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하여 질병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의약품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 건강기능 유지 지원
- 주거 환경수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추진계획

- 유관기관 등 홍보 : 2022. 12~
- 건강반장 활동 속 취약계층 발굴 : 2022. 12~
- 맞춤형서비스(방문간호 및 방문재활프로그램) : 2022. 12~
- 방문재활 성과 및 사례발표 : 2023. 6

○ 사업예산 : 36,400천원

②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 사업목표

- 건강으로부터 고립된 이웃의 의료접근성 향상
- 건강 증진 도모를 통하여 건강불평등 해소와 의료사각지대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코로나의 장기화와 고령화의 급속한 흐름 속에서 대리처방 환자의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여,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상태를 향상
- 돌보는 사람의 말에 의존하여 장기적 동일 처방으로 불안한 처방을 받던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파악하여 처방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진행

○ 참여자

-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진료를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는 환자

○ 사업내용

- 조합에 '공동 방문간호스테이션'을 구성하여 개원가의 의사가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리처방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의뢰하면, 방문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혈액검사, 문진,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방문간호를 의뢰한 개원가의 의사에 대리처방 환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더 큰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효과 도모
- '대리처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증진시키는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의 법제화와 방문간호 수가
- 참여인력 : 의사 1인, 간호사 3인, 코디네이터 1인
- 월 15회 이상의 방문간호 서비스(총 200회)
- 월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복지서비스 의뢰
 ⇒ 원주시 4개 복지관과 연계(가톨릭, 명륜,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관)
 ⇒ 보건 진료소, 원주의료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연계로 대리처방 환자 사례관리
-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10개 이상 참여
- 사업 종료에 따른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 사례 공유회 개최

○ 협력기관

- 의료기관 : 밝음의원, 고려가정의원, 도담내과, 창문외과, 이재순 내과, 원의원, 비두리 보건 진료소, 사제리 보건 진료소, 송광선내과의원, 강원도원주의료원
- 원주권 4개 복지관(카톨릭, 밥상공동체, 명륜, 원주)

○ 사업예산 : 22,800천원

③ 빈곤층 건강 지원 협력(노숙인센터,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1) 노숙인센터와 건강 예방 관리 연계 강화

○ 사업목적

- 노숙인센터 이용자들의 건강 예방 및 관리·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

○ 사업내용

- 입소검진(엑스레이, 소변, 혈액검사, 문진 등)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
- 질병에 따른 치료
-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감염 예방

○ 추진계획

- 이용자에 따른 입소 검진 실시
- 고혈압, 당뇨 등 증상정도에 따른 질환 관리 지속
- 추적관리를 통한 주치의 관계 형성

2) 원주시의사회 소속 “빈의자의사회” 일차 상담 창구 지속

○ 사업목적

- 의료비가 없어서 병을 키우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이웃을 지원하여 사회적, 신체적 자립 도모

○ 회원의료기관 : 총 25개 의료기관 ***밝음의원은 일차 상담 창구 역할**

- 종합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원
- 병 원 : 내안에병원, 원주우리병원
- 의 원 : 원주영상의학과의원, 이규남신경과의원, 홍성국신경과의원, 김남두피부비뇨기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연세플러스비뇨기과의원, 홍기수 이비인후과, 박규래정형외과의원, 백피부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우리들소아과의원, 도홍림이비인후과, 민내과, 최경훈내과, 좋은마음신경정신과, 횡성중앙의원
- 치 과 : 부부치과, 최영권치과
- 안 과 : 연세안과
- 한 의 원 : 경희한의원, 모아한의원

○ 대상자 : 의료사각지대 건강 빈곤층

○ 추진계획

- 일차 상담 창구 지속
- 상담 후 질병에 따른 회원기관 연계

○ 소요예산 : 3,000천원

■ 조합운영 및 관리

①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 사업목적

- 조합 사업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정기적 회의를 통한 경영 안정화 제고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각 6회, 격월로 운영(긴급 안건의 경우 예외 적용)
- 회의내용
 · 원장단 회의 : 밝음의원 운영 및 매출 관리, 대외협력 사업 등
 · 이사회 :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조합 운영사항 등

○ 소요예산 : 1,200천원(100천원×12회)

② 대의원 “소통의 날”

○ 사업목적

- 조합의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임직원 및 대의원 간 친밀도를 높이고 활동 참여 및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운영(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 주요내용 : 조합 주요활동내용, 중점 추진사항 등 자문

○ 추진계획

- 대의원 “소통의 날” 일정 사전 안내 : 상반기 5월 中, 하반기 10월 中
- 참석자 확인 및 운영 :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 소요예산 : 1,400천원(200천원×7회)

③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 사업목적

-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케어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의료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과 자긍심 제고
-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팀빌딩 교육을 통하여 의료협동조합의 구성원들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분기별 1회(총 4회)
- 참여대상 : 임원 및 직원
- 교육내용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공동체, 돌봄, 건강, 팀빌딩 등

○ 소요예산 : 1,000천원(250천원×4회)

④ 임·직원 워크샵

○ 사업목적

-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여 업무 능력 제고 및 열린 경영 실천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23년 內
- 교육내용 : 힐링프로그램(독서, 산책, 명상, 웃음치료 등)

○ 추진계획

- 장소 섭외 및 프로그램 준비 : 23년 內
- 참석자 확인 및 프로그램 실시 : 23년 內

○ 소요예산 : 3,000천원

■ 조합 활성화

①“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 사업목적

-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운영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산 도모
- 건강반장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 및 건강반장 발굴 육성 확대

○ 사업내용

1. 찾아가는 건강반장 집담회

- 목　　적 : 정기적인 집담회를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상호 학습
- 대　　상 : 23년 건강반장 30명
- 장　　소 : 각 활동 지역 內 경로당 등
- 운영계획 : 총 10회 운영(역향강화교육하는 달 2회 제외)
- 주요내용 : 시기별 보건교육 및 정보교환, 마을활동 공유 및 활동점검, 활동일지 점검 등
- 추진방법 : 건강반장 집담회 일정 안내(문자, 카톡, 전화 등)

2. 건강반장 역량강화 교육

- 목　　적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건강반장의 돌봄 역량 강화
- 대　　상 : 건강반장
- 운영계획 :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운영(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교육내용 : 공동체, 마을돌봄의 이해, 주민돌봄을 위한 자기돌봄, 건강증진활동, 인지향상활동 등
- 추진방법 : 건강반장 집담회 일정 안내(문자, 카톡, 전화 등)

○ 소요예산 : 1,200천원(600천원×2회)

② 신규 조합원 환영회

○ 사업목적

- 신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참여 증진, 조합과의 관계 형성 도모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23년 4월, 8월, 12월(연 3회 예정)
- 참여대상 : 신규 조합원
 · 4월 환영회 : 23년 1 ~ 3월 가입자
 · 8월 환영회 : 23년 4월 ~ 7월 가입자
 · 12월 환영회 : 23년 8월 ~ 11월 가입자
- 주요내용 : 의료협동조합 소개(미션과 비전, 조합원 권리와 의무, 진행 사업, 조합원 가입혜택 등), 체험 행사, 소정의 선물제공 등 진행

○ 추진방법

- 프로그램 및 일정 확정: 시기 도래시
- 일정 안내(문자, 알림톡 등) 및 참석자 확인

○ 소요예산 : 900천원(300천원×3회)

③ 원주건강수다회 “돌봄의 모든 것”

○ 사업목적

- 동네, 마음, 신체, 인지, 가족 돌봄 등 조합원 및 원주시민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통해 지역민들의 역량강화와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5월, 10월(총 2회, 상황에 따라 회차 등 조정)
- 참여대상 : 조합원 및 원주시민
- 학습주제 : 동네돌봄, 마음돌봄, 신체돌봄, 인지돌봄, 생활돌봄, 가족돌봄 등
- 교육내용(예시)

주제	교육내용
동네돌봄	-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 노노케어시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
마음돌봄	- 애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의 모습 확인하고 미래 설계하기 -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마음 비우기 - 인생그래프를 통한 인생 돌아보기 - 시를 통한 치유와 힐링
신체돌봄	- 면역의 중요성과 면역성 높이는 방법 - 만성질환, 급성질환의 이해 및 예방법 - 노화에 따른 조심해야 할 질병 예방법 - 노화에 따른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쉬운 몸펴기 체조

	- 중년의 성(性) - 치매선별검사 및 예방치료 - 가족을 위한 건강 상식 - 알고 있으면 좋은 응급처치 방법
인지돌봄	-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인지활동프로그램 - 미술활동을 통한 인지향상프로그램
생활돌봄	- 정리수납의 중요성과 정리수납 방법 - 스마트폰 100% 활용하기(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 PTC 따뜻한 자기돌봄
가족돌봄	- 부모와 함께 살아가기 - 자녀와 함께 살아가기

※회차별 심화 과정 만들어 진행도 고려

○ 소요예산 : 6,000천원(300천원×20회)

④ “고립된 이웃” 건강의료지원 목적기금

○ 사업목적

- 목적기금을 마련하여 지역 內 고립된 이웃들의 질병 예방, 건강관리·증진과 같이 건강과 관련된 모든 돌봄 등을 지속 실천하고 안정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조합원 및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지역 內 고립된 이웃의 질병 예방, 건강관리·증진, 돌봄 등 건강과 관련된 돌봄 일체에 사용
 · 최소 3,000원부터 가능(자동이체)
 · 기부금영수증 가능
 · 목적기금 사용내역 공개(정기후원자 대상)

○ 후원금 현황(22년 말 기준)

- **후원자 35명, 적립금액 8,740,851원**

○ 기금 활용 내역 *개인정보로 인한 간략 정리(후원자의 경우, 내역 열람 가능)

- 지원금액 : 236,930원
- 총 9명 지원, 진료비 및 검사비 등

○ 23년 추진계획

- 23년도 정기후원자 발굴 및 적립
- 대상자 및 상황 별 목적기금 사용
- 목적기금 사용 내역 공개(매해 연말, 정기후원자 대상)
- 후원자 별 기부금영수증 발급(국세청 등록)

⑤ 건강소모임

○ 사업목적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참여 증진 및 조합과의 관계 향상 도모
- 조합원 간 관계 향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향상 도모
- 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조합원으로의 참여 촉진
-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 관심사를 나누며 스트레스,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힘을 기르고 걱정, 고민,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도록 하는 지지체제 형성
-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교육
- 만성질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건강실천모임 활동

○ 사업내용

- 대　　상 : 조합원
- 운영계획 : 연중
- 주요내용

·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교육
고혈압·당뇨·암 등 식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만성질환과 식생활 습관 개선 교육
음식 개선, 운동 등 생활 실천 통해 개선 가능한 생활습관 질병과 예방학교

· 만성질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건강실천모임 활동
건강 주제 모임 개설 : 만보걷기, 간헐적 단식, 등산, 자전거,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을 주제로 한 소모임 운영 및 활동 지원

· 건강정보 안내 및 상담 : 건강목표 설정 및 건강정보·지표·수치의 측정을 통한 건강나이 산출,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상담 등

- 추진방법

· 만성질환 예방 및 질병치유 교육, 식생활·운동 습관 개선 교육(연2회)
· 암예방학교 개최(분기별 1회, 타의료사협과 공동주최)
· 건강돌봄리더 양성 교육 개최(분기별 1회, 타의료사협과 공동주체)
· 건강실천모임 10개 조직
· 건강한지역사회를 위한 돌봄모임 5개 조직

○ 소요예산 : 1,000천원

⑥ 원주의료사협 자원봉사단

○ 사업목적

- 조합원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참여 증진, 조합과 밀접한 관계 형성
- 자원봉사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및 자존감 향상
-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토론으로 만들어나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존감 향상 및 지역사회 역할수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자원봉사 활동 관리 및 인증을 통한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 봉사활동 참여 유도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연중
- 자원봉사 내용
 · 보건증진, 환경보전, 의료복지사각지대, 공익 및 주민복리 증진 등 관련 활동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
- 밝음신협,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등과 자원봉사 협력 및 연계

○ 추진방법

- 자원봉사자 모집 → 사전 신청자 확인 및 안내 → 자원봉사활동 → 인증 및 관리

○ 소요예산 : 500천원(50천원×10회)

⑦ 상호부조 사업

○ 목적 :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 사망 등 위험에 대해 상호부조 활동을 통한 구성원 간 공동체성 및 연대 강화

○ 사업명 : 질병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상호부조

○ 참가대상: 본 조합의 조합원이면서 임직원(만 70세가 되기 전까지만 참가신청 가능)

○ 참가목표 : 연 50명(2023년)

○ 상호부조 회비 : 연령대에 따라 차등을 두되, 월 10만원 ~ 40만원 매월 납부

○ 상호부조금 한도 : 질병, 사망 등 각 지급사유별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에 한함.

○ 상호부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참가 승낙, 상호부조금 지급액 심사, 상호부조 활동규정 제개정 등

○ 운영원칙

- 비영리로 가입자에게 배당금 등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거나 지급하지 않음.
- 예금 수신 및 가입자가 납부한 회비를 투자하거나 기타 상호부조와 무관함.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 상호부조 활동규정을 준수함.

사업명	수입			지출		
	항목	내역	총액	항목	내역	총액
상호부조	상호부조회비	평균 300,000원*50명*9개월	135,000,000	상호부조금	치료, 회복 및 생활지원금	121,500,000
				운영관리비	1. 상호부조운영위 2. 상호부조 시스템 개발 및 관리비	13,500,000
합 계			135,000,000			135,000,000

■ 지역사회 연계 협력

① 존엄케어 사업소 설립 추진(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존엄케어 사업소는?

환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함.

환자는 묶이지 않을 권리가 있고 기저귀 차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 할 권리가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환자의 니즈(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음.

*존엄케어란? 이런 환자의 니즈(요구)를 최대한 보장해드리고 기본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을 말함.

*구체적 실천 : 4무(냄새무, 낙상무, 와상무, 욕창무), 2탈 (탈기저귀, 탈억제대)

○정원규모 : (예정)최소 29인 ~ 59인

○주요추진내용

- 조직사업

· 각 조직별 존엄케어와 관련 모임 설치 및 운영

- 교육사업

· 존엄케어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 홍보사업

· 각 조직에 홍보 전단지 배치, 존엄케어 요양원 설립 동의자 모집 등 진행

- (인적, 물적)자금조성사업

· 존엄케어 사업소 설립을 위한 기금 조성

· 출자금 증좌 운동

· 후원금 모집

· 현물, 물품,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성 분위기 마련

②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원주시, 원주시 복지관, 유관기관 등)

○ 사업목표

- 이웃과 함께하는 원주형 돌봄 체계 구축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돌봄 서비스 구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학 협력 케어 시스템 정착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연중
- 대상 : 돌봄 욕구가 있는 노인
- 세부내용

· **병원에서 가정으로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 이웃과 함께하는 케어 전달체계 구축

· 원주형 어울림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민·관·학 협력 환경 조성

·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생활 보장
·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대상 의료돌봄 교육

○ 협력기관
- 복지관 및 유관기관(가톨릭, 밥상공동체, 명륜, 원주,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③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원주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 사업목표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가 병원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재가 통합서비스를 연계 지원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 사업내용
- 원주시 생활보장과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주거 개선이나 냉난방 지원 등 자원 연계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 환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계획(케어플랜)을 수립
· 대상자의 상태 변화, 투약 여부, 신규 질환 등 모니터링 및 의료서비스 지원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원주종합재가센터
· 대상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돌봄·식사·이동 서비스 지원 등

④ (가칭)우산동 건강돌봄 프로젝트(우산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사업목표
- 우산동 주민(사회적약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돌봄프로그램 과정 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주민참여형 돌봄모델 실현

○ 사업기간 : 2023년 中

○ 사업내용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재택의료서비스(방문진료, 방문간호)
· 약물복용관리
· 운동처방서비스
· 치매예방서비스
- 주민돌봄프로그램 과정 운영
· “노인건강돌봄지도사” 과정
(노인의 이해, 인지활동 이론 및 실습, 낙상예방교육, 보건위생교육 등)
·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지도사가 우산동 內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1:1 건강예방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의료복지취약대상자 발굴 등)

2023년 수지예산(안)

1.예산총칙

제 1 조 : 본예산의 회계연도는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 2023년 총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 ▶ **수입총액 : 1,346,510,000원**
- ▶ **지출총액 : 1,398,367,000원**
- ▶ **수지차액 : -51,587,000원**
- ▶ **영업외수입 : 588,505,847원**
- ▶ **영업외비용 : 526,363,847원**
- ▶ **당기순이익 : 10,285,000원**
- ▶ **자본예산 : 2,456,973,491원**

제 3 조 : 이 예산의 수입 및 지출 명세는 별첨 수지 예산서와 같다.

제 4 조 : 이 예산의 목간 전용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 예산의 항간 전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 사업량의 증감, 세율변동,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 할 수 있다.

제 7 조 : 추가경정 예산은 확정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023년 예산(안)

장	관	항	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집행액	세부내역 (천원, 개월)
1. 매출액					1,346,510,000	2,229,088,085	
	의료사업부				1,094,310,000	2,006,083,745	
		밝음의원		704,310,000		1,658,027,800	58,695천원×12개월
		가정간호센터		390,000,000		348,055,945	32,500천원×12개월
	재가장기요양사업부				252,200,000	223,004,340	21,000천원×12개월
		길동무		250,900,000		219,886,120	
		기타수입		1,300,000		3,118,220	
2. 매출원가							
3. 수입(매출총이익)					1,346,510,000	2,229,088,085	
4. 지출					1,398,367,000	1,444,945,831	
	관리비				1,351,063,000	1,385,367,632	
		인건비			957,570,000	1,005,649,875	
			임원보수	25,200,000		14,800,000	상근 임원(부이사장) 2,000,000×12개월 이사장, 부이사장 상여금 200,000×3회×2명
			급여(조합,의원)	937,870,000		989,264,978	의원(11명) 438,040,000 가정간호(4명) 226,770,000 조합(3명) 98,060,000 통 합 돌 봄 (춘 천 , 3 명) 175,000,000
			(인건비지원금)	(223,000,000)		(199,786,088)	통합돌봄(춘천) 185,800,000 NH농촌건강지원 15,600,000 네카 21,600,000
			급여(길동무)	177,500,000		167,775,750	사회복지사(1명) 27,900,000 요양보호사(15명) 167,775,750
			퇴직급여	40,000,000		33,595,235	
		일반경비			238,123,000	222,458,327	
			복리후생비	104,670,000		70,314,880	4대보험료, 명절선물 등
			여비교통비	2,500,000		2,632,100	
			접대비	2,500,000		2,916,700	
			통신비	8,120,000		9,015,920	인터넷, 전화, 문자발송 등
			수도광열비	10,260,000		10,129,213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세금과공과	600,000		45,196,920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장	관	항	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집행액	세부내역 (천원, 개월)
			감가상각비	12,800,000		14,596,504	
			지급임차료	30,494,000		18,081,800	의원, 법인숙소, 복합기 등
			수선비	1,500,000		1,564,500	
			보험료	3,670,000		4,091,656	의료배상공제, 보험 등
			차량유지비	5,090,000		5,399,000	법인차량, 주차, 유류비 등
			운반비	900,000		895,000	택배
			교육훈련비	2,000,000			
			도서인쇄비	1,680,000		1,762,500	신문구독, 인쇄비 등
			회의비	2,020,000			
			소모품비	5,580,000		11,175,480	
			지급수수료	25,080,000		17,659,139	
			조합이전비	10,000,000			이사비용 등
			광고선전비	3,200,000		1,718,000	리플렛, 포스터 등
			대손상각비	29,000		26,875	
			건물관리비	3,960,000		3,636,260	
			무형고정자산상각	170,000		166,980	
			잡비	200,000		209,900	
			경조사비	1,100,000		1,269,000	
		의료경비			155,370,000	157,259,430	
			양방의약품비	98,480,000		97,025,297	
			양방의료소모품비	29,540,000		30,187,823	
			외주용역비	27,350,000		30,046,310	혈액검사의뢰 등
	조합사업비				37,304,000	59,578,199	
		기획정책활동비				20,733,080	※조직활동비로 명칭 변경
			강사료			8,998,290	※관리비로 이관
			교육훈련비			2,534,420	※관리비로 이관
			회의비			4,056,210	※관리비로 이관
			연대활동비			5,144,160	※연대활동비로 이관
		조직활동비			16,200,000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1,200,000			
			대의원 소통의 날	1,400,000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1,000,000			
			임직원 워크샵	3,000,000			
			건강반장활동	1,200,000			
			신규 조합원 환영회	900,000			
			원주건강수다회	6,000,000			
			건강소모임	1,000,000			
			자원봉사활동	500,000			

장	관	항	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집행액	세부내역 (천원, 개월)
		연대활동비			21,104,000	38,845,119	
			20주년 기념 행사			28,236,700	
			재개원 10주년 행사	10,000,000			
			연대활동비	11,104,000		10,608,419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문화의거리상인회 등 회비
	예비비				10,000,000		
5.영업이익					(51,857,000)	784,142,254	
6.영업외수익					588,505,847	366,063,846	
	지원금수입(조직활동비)				533,073,847	287,947,037	
		농촌건강사업지원금		18,540,104		30,687,750	
		통합돌봄사업지원금(춘천)		250,000,000		230,792,713	
		사회백신프로젝트		4,433,743		26,466,574	
		건강돌봄프로젝트		260,100,000			
	기타수입				55,432,000	78,116,809	
		이자 및 배당금수익		30,582,000		5,826,582	
		유형자산처분이익				499,000	
		후원금		12,000,000		12,307,000	
		각종 지원금		12,650,000		12,650,000	
		잡이익		200,000			
7.영업외비용					526,363,847	743,232,608	
	지원금지출(조직활동비)				519,973,847	287,947,037	
		농촌건강사업비		18,540,104		30,687,750	
		통합돌봄사업지원금(춘천)		250,000,000		230,792,713	
		사회백신프로젝트		4,433,743		26,466,574	
		건강돌봄프로젝트		247,000,000			
	기타지출				6,390,000	455,285,571	
		이자비용				2,363,210	
		기부금		840,000		33,840,000	
		지역복지사업비		5,550,000		5,802,66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06,973,491	
		유형자산처분손실				1,342,617	
		잡손실				4,963,593	
8.법인세차감전이익					10,285,000	406,973,492	
9.법인세등							
10.당기순이익					10,285,000	406,973,492	

2023년 자본예산(안)

(단위 : 원)

항목		예산액	산출근거
1. 수입		2,456,973,491	
	이월금(고유목적기금)	406,973,491	고유목적사업적립금
	현금	50,000,000	정기예금
	차입금	2,000,000,000	금융권 및 조합원 등
2. 지출		2,456,973,491	
	토지 및 건물	2,000,000,000	토지 및 건물 구입
	인테리어(의원)	300,000,000	밝음의원 이전 인테리어
	비품 및 집기	150,000,000	의료기기 및 사무기기
	기타	6,973,491	예비비

-> 통합에 따른 출자금 증자는 반영 안함.
-> 일상적인 출자금 증자는 미비하여 반영 안함.
-> 사용 가능한 현금만 반영함.

제7호 의안 :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의결 주문 사항

- 2023년 조합의 신규 차입금 최고한도액(안)을 20억 원으로 한다.

제8호 의안 :
2022년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20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의결 주문 사항

- 2022년 1월~12월까지 탈퇴(제명)조합원 명단 및 출자금 환급 승인
- 2022년 조합원 지분(사망자)을 가족에게 양도 승인
- 2022년 말 기준 출자금 변동 승인

■ 2022년 탈퇴 조합원 명단

- 탈퇴 조합원 13명, 제명 조합원 2명, 감좌 조합원 1명, 지분양도 1명
- 출자금 환급금 11,980,000원

조합원 탈퇴 현황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2.01.21	서○현	60086	50,000	거주지이전
2	2022.02.10	나○분	200023	10,000	요양원입소
3	2022.02.11	이○희	100293	1,030,000	이용안함
4	2022.03.08	김○분	170015	50,000	이용안함
5	2022.05.06	김○주	210009	50,000	거주지 이전
6	2022.06.16	정○희	110037	50,000	거주지 이전
7	2022.06.24	김○웅	140090	50,000	이용안함
8	2022.07.20	정○숙	220056	50,000	이용안함
9	2022.10.28	이○인	220094	50,000	이용안함
10	2022.11.24	채○남	30095	200,000	이용안함
11	2022.12.01	박○웅	210068	50,000	거주지 이전
12	2022.12.16	장○현	220075	50,000	사망
13	2022.12.21	권○숙	30149	160,000	이용안함
합계				1,850,000	

- 제명조합원(환급), 감좌신청 : 3명(제명 2명+ 감좌신청1명)

조합원 제명, 감좌 현황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2.03.21	이○범	060004	30,000	이용안함
2	2022.05.09	권○중	20085	100,000	이용안함
3	2022.05.24	최○진	20002	10,000,000	감좌
합계				10,130,000	

- 조합원 지분양도 : 1명(사망 및 기타 사유) 명단(1명)

조합원 지분양도 현황						
NO.	양도일	양도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양도금액	양수 조합원명	관계
1	2022.09.27	최○호	020357	200,000	안○순	처

■ 출자금 변동 현황(22년 말 기준) : **293,592,374원**

	출자액	반환액	잔액	출자금총액
1월	580,000	50,000	530,000	298,327,374
2월	490,000	1,040,000	-550,000	297,777,374
3월	1,020,000	50,000	970,000	298,747,374
4월	765,000	0	765,000	299,512,374
5월	700,000	10,050,000	-9,350,000	290,162,374
6월	520,000	100,000	420,000	290,582,374
7월	710,000	50,000	660,000	291,242,374
8월	700,000	0	700,000	291,942,374
9월	940,000	0	940,000	292,882,374
10월	420,000	50,000	370,000	293,252,374
11월	480,000	200,000	280,000	293,532,374
12월	320,000	260,000	60,000	293,592,374
누계	7,645,000	11,850,000	-4,205,000	293,592,374

제9호 의안 : 기타 의안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결 주문 사항

-

-

<특별활동>

원주의료사협 새로운 20년을 위한 비전위원회 활동

비전위원장 : 박준영(30137) 부이사장
아카이빙 분 과 장 : 서연남(160001)
아카이빙 분과위원 : 송정부(50260) 이강록(170002) 전미선(40082)
미래포럼 분 과 장 : 천혜란(190025)
미래포럼 분과위원 : 박성용(190067) 원진숙(180012) 김소민(220004)
간사 : 신승훈(140113) 전무

[20주년 비전위원회 1차 회의]

- 일시 : 2022년 3월 29일(화) 10시
- 장소 : 조합 교육장
- 참석 : 박준영, 서연남, 천혜란, 송정부, 원진숙, 김소민, 신승훈(이상 7명)

■ 회의 내용
1. 보고 안건 : 박준영 부이사장은 작년 총회 이후 논의된 내용을 보고함.

2. 논의 안건

① 위원장 선출 : 박준영 부이사장을 선출함. 간사 : 신승훈 전무

② 활동 방향 논의 및 역할, 분과 구성
-> 2개 분과를 구성함. 비전위원회를 1)기록-아카이빙분과(분과장 서연남, 분과위원 :송정부, 신승훈), 2)포럼-미래분과(분과장 천혜란, 분과위원 : 원진숙, 김소민)로 구성함. 참석 못 한 4분 위원님도 하나의 분과를 선택해야 함.

③ 역대 임원, 직원, 대의원, 조합원 등 인터뷰 및 기록
-> 분과에서 구체적 인터뷰 및 기록 방법을 논의 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함.
-> 조합원 설문 실시함.
-> 조합원이 보관 중인 사진이나 기록물을 받기로 함. 우편 발송함.

④ 시상 및 감사패
-> NH투자증권 임직원(사유, 2015년부터 7년 동안 농촌건강사업으로 매년 3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조합의 방문의료(왕진, 방문간호, 방문구강, 방문재활 등)사업 개척에 공헌함.
-> 추가 대상자는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함.

⑤ 기타 사항
-> 비전포럼 개최 일시 확정 : 6월 23일(목) 오후 2시.
-> 20년사 책자를 발간함.
-> 2009 총회 자료집의 새로운 조합 비전으로 6대 기본가치와 10대 원칙 참조
-> 조합 이전 및 신규 공간 조성
-> 조합의 신규 사업 개척 등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기록화(사회적 일자리 사업, 주거복지 사업 등)
-> 비전 내용 : 사회적 처방, 조합원 가족까지 확대, 조합원 안부전화, 4차산업혁명 연계, 조합원 교육 월 1회, 장례문화-웰다잉, 신규 의사 구인, 코로나 19의 경험과 극복 경험을 포럼에 연계, 의료전문가와 복지전문가의 융합, 경제적 자립화, 디지털화, 새로운 MZ세대를 위한 2.0버전 및 다각화, 대기업 및 외부 펀드 조성을 통한 조합의 시너지 효과, 신규조합원 가입의 디지털화, 수목장 및 심리정서지원, 직원의 적정 급여화, 패러다임의 변화 추구

3. 보충 자료
-> 조합 연혁을 공유하고 위원장이 중요 사항을 설명함.
-> 차기 2차 모임은 4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조합 교육장에서 개최함.

[20주년 비전위원회 2차 회의]

-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10시 30분
- 장소 : 조합 교육장
- 참석 : 박준영, 천혜란, 송정부, 원진숙, 박성용, 이강록, 신승훈(이상 7명)

■ 회의 내용

1. 보고 안건 :
 - 조합 6대 기본가치와 10대 원칙의 의미
 - 전차 회의록 및 기록분과, 미래포럼분과 별 1차 회의 내용 공유

2. 논의 안건

① 역사와 기록 정리 담당자 선임 및 출판-편집 기관 선정
 - 전체 글 정리 : 권진아(추천 : 천혜란 위원)
 - 출판-인쇄 기관(비용 500만원 이상) : 도서출판 이음
 - 영상 제작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하여 고려키로 함.
 - 20년 책자는 크게 : 1부 의료사협의 키워드별 정리(사업단, 신규사업, 개척사업, 생협에서 사협 전환, 사업단 정리 등) -> 2부 의료사협 전임직원 인터뷰(이사장 6명 간담회 및 인터뷰, 실무책임자, 원장, 간호사 등) -> 3부 의료사협의 주요 통계(연혁, 임원 명단, 조합원 명부, 재무상태 등) 순으로 진행.

② 사진 및 기록물 참여 조합원 이벤트
 - 특별한 사진 및 기록, 양-질 참여, 가족 참여 등 : 참신한 이벤트 구성하여 진행
 - 상품 증정 : 진행키로 함.

③ 인터뷰 및 간담회 일정 확정
 - 박준영 위원장이 인터뷰 대상자들과 직접 통화하여 정리하기로 함.

④ 포럼 주제 설정
 - 첫째, (보건)의료+복지+요양을 통합하는 통합돌봄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중심에 놓고, 이를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구체적 사업체 형태(적정 매출유지), 자본 및 자산 형성 방안 모색(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수입을 다변화하는 증좌, 후원, 기부금, 협업프로젝트 등 활성화)
- 둘째, 외래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 컨셉을 새롭게 구성하기
- 의료사협의 역사적 배경, 운동에 대해 얘기해주는 것을 꼭 넣었으면 함.
- 기록분과, 미래포럼분과의 내용을 총괄하는 총괄분과도 구성하여 운영하자.

⑤ 기타 사항

- 본회의 3차 회의(5월 3일) 전, 분과별 2차 회의 진행하고 세부적 의견 수렴.
- 의료사협 리플렛, 홍보자료를 잘 만들었으면 한다.
- 홈페이지가 그대로다. 다시 만들었으면 한다. 글씨 크기도 키웠으면 좋겠다.
- 연령에 맞게 SNS(인스타, 페이스북 등) 유투브를 만들어 운영해 나갔으면 한다.
- 주 내용은 복지상식, 의료정보, 컨텐츠 등 으로 하자(대의원들 참여 유도)
- 이제는 활자가 아닌 영상으로 가는 시대이다
- 보건+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을 잘 살리자
- 조합원에게 수시로 안부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 한방도 접목하여 조합의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3. 보충 자료

-> 6대 기본가치와 10대 원칙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서 공유하기로 함.

-> 차기 3차 모임은 5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조합 교육장에서 개최함.

[20주년 비전위원회 3차 회의]

-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10시 30분
- 장소 : 조합 교육장
- 참석 : 박준영, 천혜란, 송정부, 원진숙, 신승훈, 박성용, 이강록(이상 7명)

1. 전차 회의 보고 - 비전위원회 2차 회의 보고
 -> 전차 회의 내용 중 : 20주년 책자는 500권 이상으로 200권을 기록용으로 추가할 것, QR코드 삽입 및 USB에 입력하여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것. A4크기로 할 것과 목차를 잘 구성할 것.

2. 기록분과, 미래포럼분과, 총괄분과 회의 경과 보고
- 기록분과 2차 회의는 진행하지 못함.
- 총괄분과모임 1차 모임 : 4월 21일(목) 진행, 박준영, 천혜란, 서연남, 신승훈.
- 미래포럼분과 2차 모임 : 4월 28일(목) 진행, 박준영, 천혜란, 원진숙.
- 기타 : 4월 25일(월) 조합원 문자 발송, 기록물 수집 안내(5월 6일까지), 2차 문자 발송 예정.

3. 논의 안건
① 포럼 기획안 검토
 -> 세부 실행안 중에서 : 식전 공연으로 조합원 참여 및 외부 인사 고려할 것, 기념포럼 자료집을 별도로 제작할 것, 초대장(6월 2일 발송) 및 포스터, 행사 촬영 기획할 것, 1부 기념식후 전체 기념사진 촬영, 비전선포는 이벤트 형식으로 함.
 -> 행사 장소 상지대 본관 5층 섭외 완료. 누리관 이벤트홀에서 만찬 진행. 행사 전체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명 예상함.

② 비전 슬로건 검토 - 새로운 20년을 위한 비전 슬로건
 - 병원급 주치의제 실현 :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안정성을 극복. 진료과의 다양화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의료협동조합 추구. 5대암 검진체계 점진적 완성. 급성기 의료기관보다는 만성기 의료기관을 준비함. 존엄 케어 추구.
 - 의료기반 통합돌봄을 지역에서 : 왕진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정간호, 방문간호, 장애인주치의, 방문재활, 방문구강 등)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 완성. 재가-주단기보호-공동생활요양원-중급규모 요양원-요양병원-재활병원. 재가와 시설을 통합하는 돌봄체계 완성.

-> 새로운 20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획(자본, 인력, 시설에 대한 타임스케줄이 필요함)이 나와야 하고 이에 따른 조합원 참여 방안이 있어야 함. 자본 참여 방안으로 펀드 조성 및 우선출자조합원 제도를 활용함.

③ 인터뷰 명단 및 일정 검토
- 전임 이사장 : 김정하, 김승환, 박태진, 장옥희, 고상백, 최정환
- 전임 실무책임자 : 신희영, 최혁진, 변상훈
- 전임 원장 : 한상환, 공인표, 양창모, 정현우, 배홍, 신기원, 박현주
- 현 원장 : 곽병은, 임동란, 강창희, 김종희
- 전 간호사 : 김광숙, 최희선, 박은주, 임종옥
- 전 직원 : 전금낭, 원향숙, 성은제, 최효심, 정미원
- 길동무 : 이선기, 김연화, 이남희, 최혜영, 신명자, 이복구,

-> 박준영 위원장이 인터뷰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 공유하기, 가능하면 5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함.

④ 기록물 수집 이벤트 중간 점검

⑤ 기타 사항
- 향후 포럼일까지 일정 기획
- 원고, 홍보, 섭외, 인터뷰 및 기록 등

-> 조합원 설문 문항을 간단히 제작하여 설문 작업할 것.
-> 기타 사항으로 : 비전 행사에 대의원 참여 방안 구상, 조합원 혜택 방안, 소비자-이용자 중심 체계 고려할 것, 웰빌-웰다잉을 위한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 및 운영 방안 기획, 인덕의료재단(존엄케어 국내 현장) 견학 추진하기

■ 비전위원회 활동사진





<진단결과보고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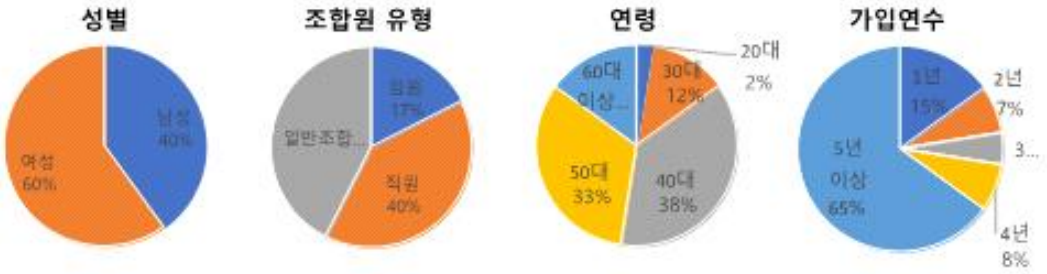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2. 9. 28 ~ 10. 24
응답인원	:	40명
유형	:	다중이해관계자
사업분야	:	보건/복지
설립연도	:	2014년 (7년이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진단결과보고서는 2022년 협동조합 자가진단 참여 협동조합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진단결과의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의 '활용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십시오.

한눈에 보는 진단결과

응답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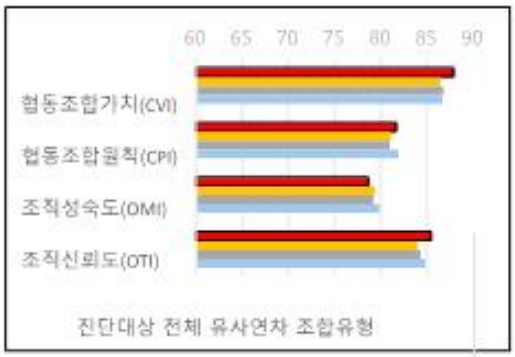
조합원 응답일치도

93% 조합원 응답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 응답일치도가 특히 높은 영역
협동조합 가치

※ 응답일치도가 특히 낮은 영역
조직신뢰도

4개 지표 점수 비교



4개지표 종합결과

지표	진단점수	전체평균 (63개소)	비교결과	유사연차 (7년이상)	비교결과	조합유형 (다중이해관계자)	비교결과
협동조합가치(CVI)	88 점	86 점	우수	87 점	우수	87 점	우수
협동조합원칙(CPI)	82 점	81 점	우수	81 점	우수	82 점	관심필요
조직성숙도(OMI)	79 점	79 점	관심필요	79 점	관심필요	80 점	관심필요
조직신뢰도(OTI)	85 점	84 점	우수	84 점	우수	85 점	우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5점척도로 측정하여 도출한 평균값을 100점만점 점수로 환산

해석방향

* **응답일치도**: 설문에 대한 조합원 응답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냅니다.
(70% 이상이면 조합원의 의견이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 **진단점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점수로 점수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부항목별 점수, 다른 협동조합 점수 등과 상호 비교하여 우리 협동조합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 **비교결과**: 우리 조합의 점수를 비교 대상 집단의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나타낸 상대적 수준입니다.
매우우수(상위 16% 이내), **우수**(상위 16~50%), **평균**(평균과 동일), **관심필요**(하위 16~50%), **개선필요**(하위 16% 이하)

2

협동조합가치 (CVI)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

협동조합가치에 대한 조합원 응답일치도

94% 조합원 응답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합원의 응답결과가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70% 이상이면 조합원의 의견이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개 세부항목 평균비교



협동조합가치(CVI) 종합진단

세부항목	진단점수	전체 (63개소)	유사연차 (7년이상)	조합유형 (다중이해관계자)	순위
자기책임	86 점	86 점	85 점	87 점	4
자조	85 점	82 점	81 점	82 점	6
민주주의	88 점	86 점	86 점	87 점	3
평등	94 점	90 점	90 점	91 점	1
공정	86 점	85 점	84 점	85 점	5
연대	91 점	86 점	86 점	87 점	2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5점척도로 측정하여 도출한 평균값을 100점만점 점수로 환산

해석방향

* **협동조합가치(CVI)**는 **6개의 항목**(자기책임, 자조,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해 조합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한 것입니다.
* **진단점수**는 조합원의 응답(5점 기준)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고, 2022년 진단에 참여한 63개 협동조합/유사연차/동일유형 협동조합들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순위**는 6개 세부항목 중에서 진단점수 평균 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6개 항목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세부분석 결과(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원칙 (CPI)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7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협동조합원칙에 대한 조합원 응답일치도

80% 조합원 응답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합원의 응답결과가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70% 이상이면 조합원의 의견이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개 세부항목 평균비교



- ~~협동조합원칙(CPI) 종합진단~~

세부항목	진단점수	전체 (63개소)	유사연차 (7년이상)	조합유형 (다중이해관계자)	순위
1원칙 조합원제도	93 점	87 점	77 점	79 점	1
2원칙 민주적통제	77 점	80 점	75 점	78 점	6
3원칙 경제적참여	77 점	77 점	73 점	76 점	5
4원칙 자율과독립	78 점	75 점	79 점	82 점	4
5원칙 교육과훈련	74 점	77 점	82 점	84 점	7
6원칙 조합간협동	87 점	81 점	84 점	84 점	3
7원칙 지역기여	87 점	84 점	80 점	81 점	2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5점척도로 측정하여 도출한 평균값을 100점만점 점수로 환산

~~해석방향~~

* **협동조합원칙(CPI)**은 **7개 항목**(협동조합 7개 원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협동조합이 7개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조합원이 평가한 것입니다.
* **진단점수**는 조합원의 응답(5점 기준)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고, 2022년 진단에 참여한 63개 협동조합/유사연차/동일유형 협동조합들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순위**는 7개 세부항목 중에서 진단점수 평균 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7개 항목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세부분석 결과(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성숙도(OMI)

우리 협동조합은 얼마나 성숙할까?

조직성숙도에 대한 조합원 응답일치도

89% 조합원 응답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합원의 응답결과가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70% 이상이면 조합원의 의견이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 세부항목 평균비교





- ~~조직성숙도(OMI) 종합진단~~

세부항목	진단점수	전체 (63개소)	유사연차 (7년이상)	조합유형 (다중이해관계자)	순위
조직시스템	77 점	76 점	66 점	68 점	3
조직분위기	81 점	82 점	79 점	79 점	1
성과	78 점	77 점	75 점	77 점	2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5점척도로 측정하여 도출한 평균값을 100점만점 점수로 환산

~~해석방향~~

* **조직성숙도(OMI)**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협동조합의 **조직시스템**(의사소통, 혁신, 전략), **조직분위기**(이사회의 역량, 동료와의 관계), **성과**(동일시, 만족, 생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조합원이 평가한 것입니다.
* **진단점수**는 조합원의 응답(5점 기준)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고, 2022년 진단에 참여한 63개 협동조합/유사연차/동일유형 협동조합들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순위**는 3개 세부항목 중에서 진단점수 평균 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3개 항목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세부분석 결과(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뢰도 (O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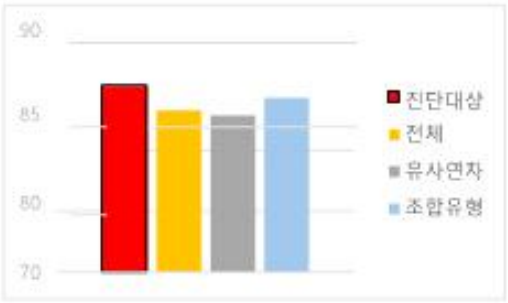
우리 조합원은 우리 협동조합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조직신뢰도에 대한 조합원 응답일치도

76% 조합원 응답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합원의 응답결과가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70% 이상이면 조합원의 의견이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신뢰도 평균비교



조직신뢰도(OTI) 종합진단

지표	진단점수	전체 (63개소)	유사연자 (7년이상)	조합유형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신뢰도	85 점	83 점	83 점	84 점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5점척도로 측정하여 도출한 평균값을 100점만점 점수로 환산

해석방향

* **조직신뢰도(OTI)**는 **7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 **진단점수**는 조합원의 응답(5점 기준)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고,
 2022년 진단에 참여한 63개 협동조합/유사연차/동일유형 협동조합들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7개 질문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세부분석 결과(1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진단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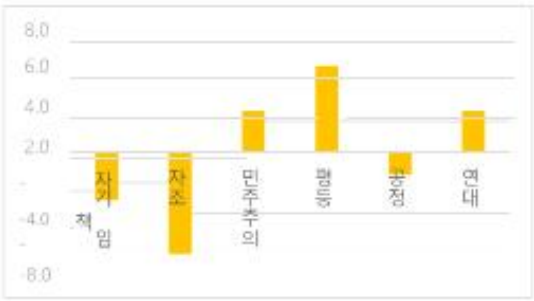
4개 지표를 중심으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자가진단을 실시한 결과,

1. 전반적으로 조직성숙도가 전체, 유사연차, 유사유형의 협동조합과 비교했을때 평균이 낮습니다.
 반면, 협동조합가치, 협동조합원칙, 조직신뢰도는 다른 협동조합의 평균에 비해 점수가높습니다.
2. 4개 지표에 대한 조합원 응답일치도가 70%으로 조합원이 각 지표에 대해 대체로 비슷하게 평가합니다.
3. 다음에 나오는 각 지표들의 세부분석에서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응답현황을 파악하고 이사회와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협동조합 가치 (CVI) 세부분석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

세부항목별 긍정응답비율과 평균



세부항목	해당 문항	긍정응답비율	평균
자기책임	B1-1~B1-5	90 %	86
자조	B2-1~B2-5	87 %	85
민주주의	B3-1~B3-3	96 %	88
평등	B4-1~B4-4	99 %	94
공정	B5-1~B5-3	92 %	86
연대	B6-1~B6-3	96 %	91

*긍정응답비율은 해당 질문에 대해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에 답한 비율을 말합니다.
*'0'점 위의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긍정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0'점 아래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부정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문항별 분석 1: 자기책임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B1-1	우리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89	98%	1
B1-2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우리 협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윤리적 의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86	90%	2
B1-3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제안해야한다.	85	85%	4
B1-4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85	90%	5
B1-5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경영 상태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86	88%	2

문항별 분석 2: 자조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B2-1	우리 협동조합은 외부 경제적지원보다는 조합원들의 경제적참여를 통해 스스로 생존해야한다.	84	85%	5
B2-2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우리 협동조합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85	85%	1
B2-3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85	88%	1
B2-4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통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시한다.	85	93%	1
B2-5	우리 협동조합은 외부 지원보다는 자체사업을 통해 자립해야한다.	85	83%	1

문항별 분석 3: 민주주의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B3-1	우리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최종결정권은 조합원에게 있어야 한다.	87	95%	2
B3-2	우리 협동조합은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87	95%	2
B3-3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89	98%	1

문항별 분석 4: 평등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B4-1	우리 협동조합에서 조합원과 임직원은 성별, 연령, 출신지역, 종교, 학력,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93	98%	3
B4-2	우리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그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93	98%	3
B4-3	우리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한다.	94	100%	2
B4-4	우리 협동조합에서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96	100%	1

문항별 분석 5: 공정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B5-1	우리 협동조합에서 구성원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87	93%	1
B5-2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이익에 대한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87	95%	1
B5-3	우리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	84	88%	3

문항별 분석 6: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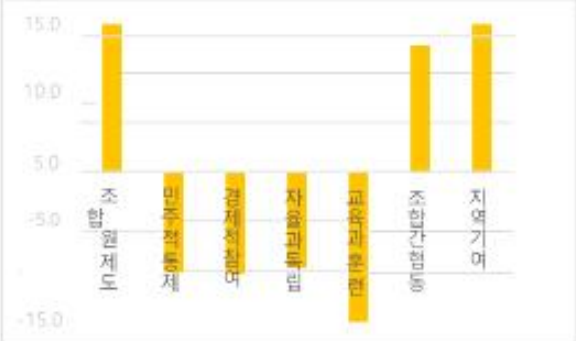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B6-1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개인이 성공하는 것보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	91	95%	1
B6-2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91	98%	1
B6-3	우리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90	95%	3

협동조합 원칙 (CPI) 세부분석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7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세부항목별 긍정응답비율과 평균



세부항목	해당 문항	긍정응답비율	평균
조합원제도	B1-1~B1-5	98 %	93
민주적통제	B2-1~B2-5	70 %	77
경제적참여	B3-1~B3-3	69 %	77
자율과독립	B4-1~B4-4	70 %	78
교육과훈련	B5-1~B5-3	60 %	74
조합간협동	B6-1~B6-3	93 %	87
지역기여	B6-1~B6-4	98 %	87

*긍정응답비율은 해당 질문에 대해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에 답한 비율을 말합니다.
*'0'점 위의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긍정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0'점 아래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부정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문항별 분석 1: 조합원제도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A1-1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임원이나 일반조합원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는다.	89	93%	4
A1-2	우리 협동조합은 성별, 나이, 출신지역, 종교, 학력,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96	100%	1
A1-3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탈퇴, 제명에 대한 규정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94	100%	2
A1-4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가입과 탈퇴가 실제로 자유롭다.	94	100%	3

문항별 분석 2: 민주적 통제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A2-1	나는 조합원으로서 우리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4	63%	4
A2-2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정관과 규약, 규정에 대해 잘 안다.	69	43%	5
A2-3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사, 경영진, 직원 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안다.	80	80%	3
A2-4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82	80%	1
A2-5	우리 협동조합 이사회는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한다.	81	83%	2

문항별 분석 3: 경제적 참여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A3-1	나는 우리 협동조합에 출자와 이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79	83%	2
A3-2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6	68%	3
A3-3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73	55%	4
A3-4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출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기꺼이 그럴 것이다.	81	73%	1

문항별 분석 4: 자율과 독립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A4-1	우리 협동조합은 정치권력에 상관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86	90%	1
A4-2	우리 협동조합은 외부지원 없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0	48%	3
A4-3	우리 협동조합은 구매자와 공급자의 간섭없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78	73%	2

문항별 분석 5: 교육과 훈련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A5-1	우리 협동조합은 내가 조합원(혹은 이사, 직원)으로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72	50%	3
A5-2	기존 조합원들은 신규 조합원들이 우리 협동조합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70	48%	5
A5-3	우리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에게 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80	83%	1
A5-4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75	65%	2
A5-5	나는 우리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조합원 교육에 만족한다.	72	55%	3

문항별 분석 6: 협동조합 간 협동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A6-1	우리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협업하고자 노력한다.	87	93%	3
A6-2	우리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84	90%	4
A6-3	우리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	82	85%	5
A6-4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90	98%	2
A6-5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의체(연합회, 협의회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92	98%	1

문항별 분석 7: 지역사회 기여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A7-1	우리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88	100%	2
A7-2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다.	87	100%	4
A7-3	우리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실천한다.	87	95%	3
A7-4	우리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89	98%	1

조직성숙도 (OMI) 세부분석

우리 협동조합은 얼마나 성숙할까?

세부항목별 긍정응답비율과 평균



세부	목	해당 문항	긍정응답비율	평균
조직	스템	C1-1~C3-4	70 %	77
의	소통	C1-1~C1-6	64 %	75
	혁신	C2-1~C2-4	73 %	77
	전략	C3-1~C3-4	74 %	78
조직	위기	D1-1~D2-6	83 %	81
이사회	역량	D1-1~D1-3	80 %	80
동료의	관계	D2-1~D2-6	85 %	82
성		E1-1~E4-5	91 %	78
	동일시	E1-1~E1-6	93 %	85
	만족	E2-1~E2-5	91 %	79
	생존	E3-1~E3-4	90 %	71
제품과서비스		E4-1~E4-5	89 %	78

*긍정응답비율은 해당 질문에 대해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에 답한 비율을 말합니다.
*'0'점 위의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긍정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0'점 아래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부정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1. 조직시스템

문항별 분석 1-1: 의사소통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C1-1	우리 협동조합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79	78%	1
C1-2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75	65%	4
C1-3	나는 정기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75	63%	4
C1-4	나는 필요하면 우리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에 모두 접근할 수 있다.	76	68%	2
C1-5	나는 이사회나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안다.	70	45%	6
C1-6	나는 현재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상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를 안다.	76	65%	2

문항별 분석 1-2: 혁신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C2-1	우리 협동조합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려고 한다.	82	83%	1
C2-2	우리 협동조합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81	85%	2
C2-3	우리 협동조합은 혁신을 위해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다.	76	70%	3
C2-4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71	53%	4

문항별 분석 1-3: 전략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C3-1	우리 협동조합은 장기적으로 달성해야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85	85%	1
C3-2	우리 협동조합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해야하는지 안다.	79	80%	3
C3-3	우리 협동조합은 성공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지 안다.	80	85%	2
C3-4	우리 협동조합은 리더십 양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69	48%	4

2. 조직분위기

문항별 분석 2-1: 이사회의 역량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D1-1	우리 협동조합 이사회는 우리 협동조합의 정관 및 규약과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77	70%	3
D1-2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이사회를 신뢰한다.	83	85%	1
D1-3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이사회가 협동조합을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82	85%	2

문항별 분석 2-2: 동료와의 관계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D2-1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서로 의견을 존중한다.	81	85%	4
D2-2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좋아한다.	84	88%	2
D2-3	우리 조합원들은 다른 관점도 환영한다.	79	78%	6
D2-4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우리 협동조합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한다.	86	93%	1
D2-5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서로 우호적이다.	83	90%	3
D2-6	나는 우리 협동조합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즐겁다.	80	80%	5

3. 성과

문항별 분석 3-1: 동일시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E1-1	우리 협동조합은 전반적으로 좋은 조직이다.	87	95%	3
E1-2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8	93%	1
E1-3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이 나의 일처럼 뿌듯하다.	88	93%	1
E1-4	다른 사람이 우리 협동조합을 비판 혹은 비난할 때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	82	90%	5
E1-5	나는 다른 사람이 우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있다.	81	93%	6
E1-6	다른 사람이 우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 마치 내가 칭찬을 받는 기분이 든다.	85	95%	4

문항별 분석 3-2: 만족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E2-1	나는 조합원으로서 우리 협동조합에 만족한다.	81	83%	1
E2-2	나는 우리 협동조합에서 수립한 정책에 만족한다.	80	88%	3
E2-3	나는 협동조합에서 내가 받는 이익과 혜택에 만족한다.	80	85%	2
E2-4	나는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79	75%	4
E2-5	나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78	73%	5

문항별 분석 3-3: 생존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E3-1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67	38%	4
E3-2	우리 협동조합은 직원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	75	68%	1
E3-3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다.	72	58%	2
E3-4	우리 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이윤(잉여)을 창출할 수 있다.	69	45%	3

문항별 분석 3-4: 제품과 서비스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E4-1	나는 우리 협동조합에서 생산(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한다.	78	75%	3
E4-2	우리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준수한다.	82	90%	2
E4-3	우리 협동조합에서 생산(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은 경쟁사에 비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74	58%	5
E4-4	우리 협동조합에서 생산(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75	65%	4
E4-5	우리 협동조합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83	98%	1

조직신뢰도 (OTI) 세부분석

우리 조합원은 우리 협동조합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긍정응답비율과 평균

세부항목	해당 문항	긍정응답비율	평균
조직신뢰도	F1-1~F1-7	95.4 %	85

세부문항 결과: 조직신뢰도

*비율: 긍정응답비율

번호	질문	평균	비율	순위
F1-1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신뢰한다.	88	100%	1
F1-2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서 신뢰한다.	88	100%	2
F1-3	나는 우리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책을 믿고 따른다.	86	98%	3
F1-4	나는 우리 협동조합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86	95%	3
F1-5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82	88%	7
F1-6	나는 우리 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85	95%	5
F1-7	우리 협동조합은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족시키려고 성실히 노력한다.	84	93%	6

〈부 록〉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01. 10. 30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결성**
2001. 12. 15	**발기인대회**
2002. 5. 4	**법인창립총회**
2002. 6. 5	**법인설립인가(강원도 제7호)**
	밝음의원, 밝음한의원 개원(원주시 중앙동 122번지)
2002. 11. 16	**제1차 정기총회 개최**
2003. 2. 15	일본오사카 의료생협 견학, 제1회 보건학교 운영
2003. 3	원주협동조합운영협의회(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가입, 상지대학교와 교류협력 체결,
2003. 6	한국의료생협연대(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가입
2004. 6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재가케어복지사업 실시**
2005. 1	호저지역 농민 보건의료환경 조사
2005. 3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교육문화워커즈'멋살림'출범**
2005. 7	사회적적일자리 교육문화워커즈 멋살림 '어린이방과후학교'운영
2006. 3.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사업 '농촌어르신 행복찾기' 시작**
2006. 4.	실업극복지원사업 '지역주민 조사사업' 실시
2007. 10. 29	**노동부 제 2007-13호로 사회적기업 인증**
2008. 2. 13	**밝음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원도 제10호로 인가 받음**
2008. 3	**2008년 위-스타트 강원도 마을 신규선정 지역으로 확정**
2008. 5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2008. 7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서비스 개시
2008. 9	밝음의원이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인가 받음
2009.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원주주거복지센터 운영**
2010. 2. 26	**제8차 정기총회(제2차대의원 총회)**
2010. 4	국민건강보험 지정 건강검진기관 개설
2011. 2. 25.	**제9차 정기총회(제3차대의원 총회)**
2011. 3. 27.	우리동네의원 개원(제2진료소, 단구동)
2012. 3. 26.	**제10차 정기총회(제4차대의원 총회)**
2013. 3. 4.	밝음의원 재개원(곽병은, 임동란 원장 부임)
2013. 3. 28.	**제11차 정기총회(재5차대의원 총회)**
2014. 3. 21.	**제12차 정기총회(재6차대의원 총회)**
2014. 5. 4.	조합 창립 12주년
2014. 6. 11.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선정**
2014. 7. 16.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창립 총회**
2014. 10. 30.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2015. 2. 27.	**제1차(통합13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5. 4.	우리동네의원 지점 폐원
2015. 6. 1.	장애인주치의사업,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전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16. 3. 10.	**제2차(통합14차) 대의원총회 개최(제2기 임원 선출)**
2016. 5. 15.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전개-2차년도
	(NH투자증권 임직원지정기탁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16. 10. 1.	조합원 작품 전시 밝음갤러리 오픈
2016. 10. 21	**2016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커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및 아쇼카재단 주관)
2016. 12. 20.	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국세청 등록

2017. 3. 15.	**제3차(통합15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7. 6. 28.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사회적기업 10주년 우수 사회적기업 공로 인정)**
2018. 3. 15.	**조합 제4차(통합 1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사협 제3기 임원(이사7명, 감사2명)선출 임원 및 대의원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2018. 5. 14.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록**
2018. 7. 20.	아산사회복지대단 농어촌 건강복지 증진사업 선정(2,000만원)
2018. 12. 31.	조합 3기 대의원 110명 선출 공고
2019. 3. 20.	**조합 제5차(통합1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19. 11. 21.	커뮤니티케어 관련 조합 특강 및 방문진료사업 간담회 개최
2019. 12. 27.	보건복지부 왕진시범사업 참여기관 등록 및 사업 개시
2020. 5. 7.	**조합 6차(통합1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 시기)**
2020. 5. 18.	춘천 소양강댐 수몰지역 방문의료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시(1억1천만원)
2020. 6. 1.	원주시, 강원도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참여(방문진료 및 건강반장활동가 사업 담당)
2020. 9. 1.	202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협의체 MOU체결(강원도원주의료원)
2020. 11. 1.	원주시 보건소, 만7세 아동 알레르기 검사 위탁 수행(3,600만원)
2021. 3. 25.	**조합 7차(통합1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코로나19바이러스 지속)**
2021. 7. 23.	사회백신 프로젝트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선정(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0만원)
2021. 8. 11.	제2진료소 “우리동네주치의 의원” 개원
2021. 9. 8.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조합, 원주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2021. 12. 28.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원주시치매안심센터)
2021. 12. 31.	조합 4기 대의원 100명 선출 공고
2022. 1. 26	춘천 소양강댐 수몰지역 방문의료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시(1억1천만원)
2022. 2. 4.	“코로나 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집중관리군)
2022. 3. 24.	**조합 8차(통합2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코로나19바이러스 지속)**
2022. 3. 29.	비전위원회(2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2022. 5. 31.	제2진료소 “우리동네주치의 의원” 휴원
2022. 6. 13.	**코로나 19 유공 포상 표창패 수상**(강원도지사.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
2022. 6. 23.	**조합 20주년 기념 행사 및 포럼**(상지대학교 본관 5층)
2022. 9. 1.	사회백신프로젝트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2차년도 사업 시작(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2. 11. 3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보건복지부, 강원도 최초)**
2022. 12. 1.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전개-8차년도 (NH투자증권 임직원지정기탁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22. 12. 19.	**강원도사회적경제한마당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상”(김종희 원장)**

2022년 신규 조합원 명단(102명)

거주지	성명	거주지	성명	거주지	성명
태장동	안병순	문막읍	이영애	삼호읍	최은희
소초면	송규열	반곡동	김연심	호저면	구교선
지정면	최선화	행구동	박세환	행구동	이윤승
지정면	김소민	단구동	박성용	소초면	김옥화
신림면	이성주	호저면	정병용	지정면	목광균
단구동	임은경	소초면	이봉선	개운동	김달현
명륜동	도상욱	반곡동	홍용미	지정면	김태성
명륜동	조덕환	단계동	송계호	흥업면	이훈배
단구동	원용자	우산동	최유진	단구동	여준민
지정면	박동국	판부면	김인성	원 동	임춘선
판부면	황금희	단구동	김향숙	봉산동	이경순
개운동	김길남	소초면	신명숙	만종3리	제갈귀자
잠실동	김은경	봉산동	최옥자	개운동	오봉순
행구동	조상도	반곡동	권은경	단구동	이연옥
단구동	이명자	단구동	양승자	단구동	류옥화
평원동	원건상	목현동	김영남	흥업면	설영숙
단구동	김승중	호저면	이석희	명륜동	강옥선
판부면	박상녀	명륜동	이영자	봉산동	김영순
판부면	이순덕	명륜동	차인철	일산동	조영현
행구동	최은숙	원 동	김재헌	단계동	육미숙
소초면	송복조	무실동	최문자	학성동	심영옥
단구동	추연구	호저면	박점란	태장동	김남숙
반곡동	장순예	태장동	김진숙	태장동	한철수
단구동	박춘자	횡성읍	박재영	관설동	박춘우
태장동	박지윤	신림면	김기열	소초면	곽오수
태장동	원용국	단계동	박병열	단구동	장헌역
태장동	김영순	명륜동	엄형섭	관설동	조원민
교문동	김은영	남천동	임인순	명륜동	박병숙
봉산동	신순덕	산본동	신동진	신림면	안봉녀
일산동	최안서	우산동	고영한	단구동	윤수진
일산동	전태준	후평동	이상규	소초면	조영자
태장동	최종숙	서원면	우광혁	둔내면	오인옥
단구동	고태우	단구동	김옥순	태장동	고동선
행구동	정명자	명륜동	한상인	원 동	이현숙

CMS "고립된 이웃" 정기 후원자 명단(무순)

성 명	최초후원년월	성 명	최초후원년월
윤순모	2020-06	조성기	2020-08
변동현	2020-06	(주)인스	2020-07
조백훈	2020-06	(주)청코리아	2020-08
최덕천	2020-06	심연옥	2020-06
이광희	2020-06	서연남	2022-02
김현경	2020-06	전미선	2020-06
김민정	2020-06	이인재	2021-05
이강익	2020-06	조종오	2021-06
이창호	2020-06	조미화	2021-08
김은영	2021-02	김용대	2022-01
신옥경	2020-06	천혜란	2022-02
이창희	2020-06	임지헌	2020-06
이현주	2020-06	이상진	2020-06
박재현	2020-06	윤병하	2020-06
박찬현	2020-06	하종우	2020-06
김선기	2020-06	백송희	2020-06
서지혜	2020-06	신승훈	2020-06
김경준	2020-06	박순희	2020-06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4기 대의원명단(100명)

성명	조합원 번호	성명	조합원 번호	성명	조합원 번호
강창희	180021	백송희	30035	이숙	120125
구경모	200035	백종준	20096	이승준	100154
권누리	90152	변상훈	70026	이용희	110246
권윤혜	50082	변재수	130123	이윤교	70139
권효정	70129	서연남	160001	이인재	20207
김경숙	40120	손종하	140076	이인표	150037
김경옥	160007	송명자	170011	이창호	170028
김경준	50101	신명자	120109	이창희	20016
김동필	190007	신승훈	140113	이현주	20044
김미연	70123	신옥경	60121	임용덕	200031
김민정	30133	신재춘	60108	임종호	100156
김민희	50279	신희영	20071	임지헌	110112
김선기	100162	심연옥	110111	장동성	210003
김연화	60057	안의현	180004	장동영	30081
김유미	50209	안진구	50194	전미선	40082
김윤정	180013	안호범	140077	정금낭	90058
김은영	180032	안희정	90051	정민숙	200003
김재중	210012	양미형	180002	정연우	180005
김종희	130208	양정열	30154	정용호	20005
김지영	200042	염은경	190062	정종숙	20328
김현경	130033	우봉학	160020	조성기	180007
김형미	200036	우순자	200013	조성희	170006
노윤배	30070	원유일	20169	조세훈	30069
노혜정	50300	윤미자	100010	지숙현	20119
문병선	20263	윤병하	20124	천혜란	190025
박경남	190021	윤숙향	190010	최현택	30007
박노광	180003	이강록	170002	최효심	30071
박덕길	170012	이광희	100188	최희선	40084
박순희	40042	이기영	40083	하종우	30136
박재현	120072	이도식	30195	한미희	180027
박종현	20129	이상순	100238	한성환	130176
박준영	30137	이상진	170027	허연숙	70118
박찬현	160056	이상훈	40111		
배연호	30008	이설희	90075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 관(신)

제정 : 창립 총회 2014년 7월 16일(승인2014.10.30.)
1차 개정 : 제1차 대의원총회 2015년 2월 27일(승인2015.3.25.)
2차 개정 : 제2차 대의원총회 2016년 3월 10일(승인2016.4.18.)
3차 개정 : 제4차 대의원총회 2018년 3월 15일(승인2018.6.21.)
4차 개정 : 제6차 대의원총회 2020년 5월 7일(승인2020.6.18.)
5차 개정 : 임시대의원총회 2021년 1월 8일(승인2021.4.2.)
6차 개정 : 제8차 대의원총회 2022년 3월 24일(승인2022.4.15.)

전문		
제1장	총	칙(제 1 조 ~ 제 9 조)
제2장	조 합	원(제10조~제17조)
제3장	출	자(제18조~제23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4조~제43조)
제5장	임	원(제44조~제56조)
제6장	사	업(제57조~제59조)
제7장	회	계(제60조~제69조)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제73조)
부칙		

전 문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생명사상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활동해 온 원주한살림생협, 밝음신협, 원주생협과 지역주민들이 협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의료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세워졌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개인이 사유하는 의료도,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도 아닌 협동을 통해 서로 살리는 상생의 의료건강사회를 꿈꾸며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으면서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등의료·건강사회의 구현을 통해 협동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의 문제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건강의 실현과 맞물려 있음을 직시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과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는 사회만이 건강한 사회임을 확신한다.

이에 따라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협동적 자치를 통해 민주적인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협동조합과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을 촉진하며 협동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중앙동)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5차 개정)

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중앙동)번지에 둔다.
②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5차 개정)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강원도, 경기도 여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일원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또는 강원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6차 개정)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차 개정)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4차 개정)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4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의원의 자격은 조합원중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인 조합원으로 한다.(문구 추가, 2차

개정)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3차 개정)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게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기수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가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②제1항제1호(정관변경), 제7호(협동조합합병,분할,해산, 휴업) 제8호(조합원제명), 제9호의 사항(출자금 환급)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가, 2차 개정)

제33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

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차 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차 개정)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3차 개정)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직원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5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고문) ① 총회의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 업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

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아. 자원봉사활동(문구 추가, 4차 개정)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호중 하나로 한다.

1.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2.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상호 구분 계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6차 개정)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6차 개정)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60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기부금 및 회비공개) ① 조합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이유로 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④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⑤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63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서류의 열람과 사본

의 청구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하며, 공개할 회계장부의 종류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으로 한다. 서류의 열람■청구 신청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제64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6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7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7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9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인가일) 2014년 10월 30일(창립총회 2014년7월16일)
제2조(1차개정) 2015년 2월 27일(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15년 3월 25일(보건복지부)
제3조(2차개정) 2016년 3월 10일(제2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16년 4월 18일(보건복지부 제35-3호)
제4조(3차개정) 2018년 3월 15일(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18년 6월 21일(보건복지부 제35-4호)
제5조(4차개정) 2020년 5월 7일(제6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0년 6월 18일(보건복지부 제35-5호)
제6조(5차개정) 2021년 1월 8일(임시대의원 총회)
(인가일) 2021년 4월 2일(보건복지부 제35-6호)
제7조(6차개정) 2022년 3월 24일(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2년 4월 15일(보건복지부 제35-8호)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 정의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 약속

아플 때, 삶을 돌아 보고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내가 아픈 것은 세상이 아픈 것임을 깨닫고
그 아픔의 근원을 바라봅니다.

생명이 내는 소리에 귀 열게 하고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임을 압니다.

늘 안부를 묻고 살피는 서로가 되고
이웃이 아플 때 손 내밀어 잡습니다.

생명, 그 본성처럼 늘 서로 돕고
더불어 하나 됨 속에서 기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빛날 수 있게 하소서.